

특 정 감 사

감 사 보 고 서

- 공영홈쇼핑 경영 및 감사 활동에 대한 실태 점검 -
(국회 감사 요구 등)

2021. 7.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감 사 관 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중점 및 대상	2
3. 감사실시 과정	2
4. 감사결과 처리	2
II. 감사대상 기관 및 업무 현황	3
1. 일반현황	3
2. 예산현황	4
III. 감사결과	5
1. 처분요구와 통보 사항(총 5건)	
■ 국감지적사항(1, 2번), 감사요청사항(3, 4번), 기타사항(5번)	
(1) 계약사무 업무처리 부적정(인사자료 통보·경징계·경고·주의)	5
가. 수의계약 관련	7
나. 하도급 계약 관련	16
(2) 사내이사(☉☉☉☉본부장) 연임 규정 미흡(통보)	26

- (3) 일상감사 운영 부적정(기관주의)29
- (4) 비리의혹 제보자 보호 부실 및 셀프감사 의혹(인사자료 통보·경고) ...35
- (5) 비위의혹 관련 피조사자에 대한 의원면직 부적정(경고)43

2. 처분하지 않는 사항(총 6건)

▪ 국감지적사항(6, 7, 8번), 감사요청사항(9, 10, 11번)

- (6) ●●●본부장 부정 채용 의혹 관련47
- (7) 징계처분 직원의 보직발령 의혹 관련49
- (8) 사측의 노동조합 압력 의혹 관련50
- (9) 대표이사가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지시했다는 의혹 관련52
- (10) 강압적인 확인서 징구 의혹 관련54
- (11) 제척대상 감사인의 감사참여 의혹 관련55

IV. 처분 요약57

표 목 차

[표 1] 감사요구 요지	1
[표 2] 공영홈쇼핑 조직·인력 현황	4
[표 3] 공영홈쇼핑 예산 현황	4
[표 4] 자문용역계약 세부 내용	7
[표 5] 국문 BI 용역계약 세부 내용	13
[표 6] 광고대행사 과업 내용	16
[표 7] 하도급계약 내용	16
[표 8] 일상감사 실적	29

그림 목 차

[그림 1] 선임 절차	26
[그림 2] 일상감사 절차	32
[그림 3] 신상품 입점절차	35

별첨 목 차

[별첨 1] 일상감사 해당 업무범위	34
---------------------------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회는 2020. 10. 19.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와 2020. 10. 26.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의 용역계약 부당 개입 등 비위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으며, 공영홈쇼핑은 2020. 10. 28. 상임감사 등과 관련된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감사 요구사항과 공영홈쇼핑의 감사 요청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위법성·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표 1] 감사요구 요지 >

1. 국회 지적사항 관련(5건)

- ① 대표이사가 계약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관련
- ② 사내이사(◎◎◎◎본부장) 연임 절차 부적정
- ③ ●●●본부장 채용시 합격자가 근무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은 채용 취소사유에 해당
- ④ 출장 중 법인카드 휴일 사용으로 징계받은 직원을 감사실 팀장으로 임명
- ⑤ 비위 의혹을 제기한 노조위원장 등에 2년간 임금 반환을 청구하는 등 노조 압박

2. 감사 요청사항 관련(5건)

- ① 공영홈쇼핑 비리 의혹 제보내용 관련자인 상임감사와 감사실장이 감사에 개입
- ② 일상감사 운영 부적정
- ③ 대표이사가 제2콜센터 사무집기 구매를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 ④ 상임감사 등 감사실이 대표이사 비위 의혹에 대해 확인서 작성 강요
- ⑤ 제척대상인 감사실 직원이 특정감사에 참여하는 등 부실감사

3. 기타사항(1건)

- ① 중소벤처기업부 특정감사 중 피감사자에 대한 의원면직 허가 부적정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국회 지적사항과 감사 요청사항을 중점으로 대표이사가 용역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는지, ○○○○본부장 연임 절차가 적정하였는지, ●●●본부장 채용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0. 10. 20.부터 같은 해 11. 03.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11. 04.부터 11. 20.까지 13일간 감사인원 7명(산하 공공기관 3명)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관계자 문답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지감사 연장을 계획하였으나, 공영홈쇼핑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17명) 등으로 비대면 조사로 전환하여 감사를 진행하던 중 문답 등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여 2021. 01. 25.부터 02. 05.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추가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자문위원회 심의 등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2021. 7. 23.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및 업무 현황

1. 일반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매와 홍보를 확대하고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를 선도하기 위해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주) 등이 출자¹⁾하여 2015. 3. 5. 설립되었으며, 2018. 2. 6.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100% 중소기업 제품으로 방송을 편성하여 전국 3,576만 가구에 송출하고 있고, 가입 고객 수는 2020. 12월 기준 1,838만 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²⁾이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수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조건인 평균 20%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타 홈쇼핑사에 대비하여 평균 13%p 낮은 수수료이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초기 창업기업 등의 홈쇼핑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적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공영홈쇼핑의 조직은 2020. 12월 기준, 4본부 1사업부 11실 1사무국 39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원은 정원 396명, 현원은 361명(계약직 제외)이다.

1) (주)중소기업유통센터 50%, 농협경제지주(주)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2) 가입 회원 수 (만명): ('15) 219 → ('16) 562 → ('17) 838 → ('18) 1,118 → ('19) 1,384 → ('20) 1,838

< [표 2] 공영홈쇼핑 조직·인력 현황 (2020. 12. 31. 기준) >

구분	전체	본부	본부 외
직제	4본부 1사업부 11실 1사무국 39팀	4본부 10실 1사무국 34팀	1사업부 1실 5팀
정원(현원)	396(361)명	378(347)명	18(14)명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2. 예산현황

공영홈쇼핑 예산은 2020년 기준 2,534억 원(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수입의 경우 자체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의 경우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된다.

< [표 3] 공영홈쇼핑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당초 (A)	자체변경 (B)	추경 (C)	현액 (A+B+C)	
지출	□ 인건비	213	227	238	290	△36	-	254
	□ 경상경비	199	238	246	282	△12	-	270
	□ 사업비	1,023	1,116	1,151	1,320	△23	-	1,297
	□ 기타	373	361	397	510	203	-	713
	○ 차기이월금	343	338	379	404	284		688
	○ 시설 등 투자	29	22	16	97	△77		20
	○ 영업외비용	1	1	2	9	△4		5
계	1,808	1,942	2,032	2,402	133	-	2,534	
수입	□ 자체 수입	1,399	1,528	1,598	1,909	143	-	2,052
	□ 기타	409	414	434	493	△11	-	482
	○ 전기이월금	340	343	338	379	-	-	379
	○ 총당금	67	69	93	110	△21	-	89
	○ 영업외수익	2	2	3	4	10	-	14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Ⅲ-① 수의계약 및 하도급계약 업무 부당 처리

공영홈쇼핑 GGG 전임 대표이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은 전(前) 대표이사(이하 “GGG 대표”라고 한다) 취임 후 시장내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컨설팅 등 디자인 개발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자문 계약과 국문 BI 제작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캐릭터 제작과 영문 BI 제작 등의 경우에는 광고대행사³⁾를 통한 하도급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 공통사항 >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주)dddddddd과 종합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

- 계약기간 : 2019. 1. 7. ~ 2020. 1. 6.
- 계약금액 : 30억 원
- 계약내용 : 브랜드 캠페인 기획, 중장기 슬로건 개발 등

< 수의계약 관련 >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동 항 제4호에서는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요령 제1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하도급계약 관련 >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수의계약 관련

1) 자문용역계약 부적정

공영홈쇼핑은 디자인·영상·메시지 개발을 위하여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aaa와는 디자인 자문용역계약을, (주)bb과는 영상 자문용역계약을, ccc과는 메시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4) 계약 내용은 아래 [표4] 와 같다.

< [표 4] 자문용역계약 세부 내용 >

계약명	계약 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식	과업내용
디자인 자문 컨설팅 용역	aaaaaa	39,600,000원	'18. 7. 16. ~ '19. 7. 15.	수의계약	디자인 품질 개선 코칭
촬영(제작) 자문 컨설팅 용역	(주)bb	39,600,000원	'18. 7. 16. ~ '19. 7. 15.	수의계약	방송영상 품질 개선 코칭
메시지 개발 컨설팅 용역	ccc	39,600,000원	'18. 9. 17. ~ '19. 9. 16.	수의계약	메시지 자문 코칭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용역 등을 발주할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계약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동 강령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4) 동 용역이 수의계약 대상인지를 검토한 결과, 동 용역의 주요 목적이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전문지식을 업무수행 등에 활용하는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동 용역은 아래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영홈쇼핑은 자문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2020. 8월 법률 자문(법무법인 0000)을 의뢰한 결과 “자문 컨설팅 용역계약은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다.
- 한편 중기부에서도 동 자문용역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법률 자문(000 법률사무소)을 의뢰한 결과, ①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에서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이라고 규정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② 자문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자문용역계약 성격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행정청이나 발주처에게는 목적과 필요성 및 합리성을 위해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점 등에 비추보면 자문용역계약 등도 위 조항에 해당될 수 있어 본 자문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

미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행 기간 등⁵⁾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요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등 계약 비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GGG 대표⁶⁾는 2018. 7. 11. ☐☐☐☐실장 III⁷⁾(이하 “III 실장”이라 한다)과 ☐☐☐팀장 ☐☐☐⁸⁾(이하 “☐☐☐ 팀장”이라 한다)에게 주 2회 출근하는 자문위원 2명을 위촉하고 자문료는 월 2,000,000 ~ 3,000,000원⁹⁾ 정도 지급할 것을 지시하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자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¹⁰⁾하였다. 이후 GGG 대표는 2018. 7. 11. III 실장으로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 어렵다는 보고¹¹⁾를 받고, 다음날인 7. 12. III 실장과 ☐☐☐ 팀장에게 LLL을 디자인 자문위원으로, JJJ을 영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 상견례 일정¹²⁾¹³⁾을 잡을 것을 지시하면서, 앞서 언급한 신용불량자가 대표로 있

5) ① 계약의 목적, ② 계약금액, ③ 이행기간, ④ 계약보증금, ⑤지체상금,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GGG 대표 재직 기간 : 2018. 6. 28. ~ 2021. 1. 31.

7) III 실장 ☐☐☐☐실 재직 기간 : 2018. 1. 18. ~ 2019. 1. 13.

8) ☐☐☐ 팀장 ★★★★★팀 재직 기간 : 2018. 1. 18. ~ 2018. 8. 31.

9) GGG 대표는 자문료 등 보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II 실장은 자문료는 당시 공영홈쇼핑의 업무 필요에 따른 각종 평가 등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의 수당 수준에서 GGG 대표가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팀장은 GGG 대표에게 월 300만 원으로 의사결정을 받았다고 진술

10) ☐☐☐ 팀장은 GGG 대표가 디자인 관련 60대 자문위원 1명, 영상 관련 70대 자문위원 1명을 위촉하고 자문위원이 위촉되면 자문료는 월 2~3백만 원 정도 지급할 것을 지시하면서, 자문위원 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개인 통장을 개설하기 어려우니 현금 지급 방법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II 실장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

11) ☐☐☐ 팀장은 당시 MMM 팀장에게 자문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MMM 팀장은 원천 징수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원천 징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여 ☐☐☐ 팀장은 이를 III 실장에게 보고하였고 III 실장은 GGG 대표에게 보고함.

12) ☐☐☐ 팀장이 LLL과 JJJ에게 연락하여 2018. 7. 16.로 상견례 일정을 확정

13) ☐☐☐ 팀장 수첩에는 “7월 12일 LLL 대표(디자인, BI, 자막 등), JJJ 감독(영상, 광고 등 모든 자문), 상견례 일정 잡을 것”이라고 적혀있었다.

는 업체(eeeeeeee)와 거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¹⁴⁾한 후, 2018. 7. 16. 자문위원 상견례 후 같은 날 자문위원(LLL, JJJ) 출근과 관련하여 이번 주는 7. 16.(월), 7. 19.(목) 출근시키고 다음 주부터는 7. 23.(월), 7. 25.(수) 출근시킬 것을 지시¹⁵⁾하는 한편 같은 해 8. 2.에는 ㉿㉿㉿ 팀장에게 KKK를 메시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영홈쇼핑 대표라는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 팀장은 위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작성일¹⁶⁾을 실제 계약일¹⁷⁾보다 앞선 날짜로 하여 작성¹⁸⁾하는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이행 기간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 팀장은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과 상이하게 작성한 것이 향후 문제될 것을 인지하고 이를 수습하고자 실무자에게 계약서에 인쇄일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계약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인쇄일을 삭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¹⁹⁾하는 등 하급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게 하였다.

14) 공영홈쇼핑은 eeeeeeee와의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eeeeeeee의 체납 사실을 알고 JJJ 자문위원으로부터 ㉿bb을 추천받아 ㉿bb과 계약을 체결함.

15) ㉿㉿㉿ 팀장은 “상견례 후 GGG 대표가 LLL, JJJ이 이번 주만 월, 목에 출근하고, 다음 주부터 월, 수 출근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 팀장 수첩에는 “7월 16일 주 2회: 월/수 (13시~18시), 금 주는 월·목으로, 목: BI업체 방문”이라고 적혀있으며, III 실장의 수첩에는 “7/16(月) 날짜 : 월·수 오후 1시~, 단톡방 구성”이라고 적혀있다. 한편, ㉿㉿㉿ 팀장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용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업무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

16) 디자인 분야 : 2018. 7. 16. / 촬영 분야 : 2018. 7. 16.

17)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문서 인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 과장은 2018. 7. 25. 표준 계약서(디자인 및 촬영 분야)를 최종 인쇄하였다.

18) 계약날짜를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한 사유를 검토한 결과, ㉿㉿㉿ 팀장은 디자인·영상 자문위원이 2018. 7. 16.부터 용역을 개시하였는데, 실제 계약날짜는 같은 해 7월 말경(각주17 참조)으로 용역 개시 날짜와 실제 계약날짜 간에 공백이 발생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계약날짜를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

19) 당시 계약을 체결한 ㉿㉿㉿ 차장은 “㉿㉿㉿ 팀장의 지시에 의해 문서의 인쇄일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단의 워터마크를 삭제하였고 문서 기안자는 본인으로 되어있으나, ㉿㉿㉿ 팀장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라고 진술

한편 ⅡⅡⅡ 과장²⁰⁾은 디자인 개발 자문위원인 LLL으로부터 ffffff의 비교견적업체인 (주)gggg의 견적서²¹⁾를 제출받아 2018. 7말 경 ffffff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ⅳⅳⅳ 차장²²⁾은 지인인 (주)hhhh 대표로부터 (주)bb의 비교견적업체인 (주)hhhh의 견적서²³⁾를 제출받아 2018. 7말 경 (주)bb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NNN 팀장²⁴⁾은 메시지 개발 자문위원인 KKK로부터 ccc의 비교견적업체인 (주)iiii의 견적서²⁵⁾를 제출받아 2018. 9. 17. ccc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비용의 우위 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자 의견】

가) GGG 대표

GGG 대표는 자문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추천을 요청²⁶⁾받아 LLL, JJJ 등을 추천하였고, 당시 업무 지시는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업무 등을 진행하라는 것이지 특정인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답변하면서, 자문위원 후보 리스트 중에서 직원들의 안내한 절차에 따라 직원들과 함께 2명을 선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에도 방송본부의 요청으로 메시지 자문 1명을 추가하였으며 계약 관련 세부 사항들과 절차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계약 관련 GGG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직원(Ⅲ 실장, ⅳⅳⅳ 팀장)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자문위원(LLL, JJJ, KKK) 모

20) ⅡⅡⅡ 과장 ★★★★★팀 재직 기간 : 2018. 5. 14. ~ 2019. 1. 13.

21) 디자인 분야 : ffffff 39,600,000원, (주)gggg 44,000,000원

22) ⅳⅳⅳ 차장 ★★★★★팀 재직 기간 : 2018. 4. 19. ~ 2019. 1. 13.

23) 메시지 분야 : ccc 39,600,000원, (주)iiii 46,200,000원

24) NNN 팀장 ⅲⅲⅲⅲⅲ팀 재직 기간 : 2018. 9. 1. ~ 2019. 12. 24.

25) 영상 분야 : (주)bb 39,600,000원, hhhh 49,500,000원

26) GGG 대표가 누구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았는지는 불분명함.

두 GGG 대표의 지시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²⁷⁾, GGG 대표가 2018. 7. 12. III 실장과 ㉿㉿㉿ 팀장에게 LLL을 디자인 자문위원으로, JJJ을 영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 상견례 일정을 잡을 것을 지시한 다음 날인 7. 13. 자문위원 후보 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²⁸⁾, 당시 방송기획팀 팀장 등이 방송본부 차원에서 자문위원 위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²⁹⁾, 동 계약과 관련하여 신용불량자에 대한 자문료 지급 방법을 검토하게 하고, 계약이 체결되기 전 검토 단계에서 자문위원과의 상견례 일정을 잡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GGG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 팀장

㉿㉿㉿ 팀장은 자문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자문용역계약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였다”라고 인정하면서 “디자인·영상 자문위원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문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업무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문용역의 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팀장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후에 동 문제 등을 수습하고자 계약서의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과 상이하게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문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업무적 압박감을 느껴 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웠다는 ㉿㉿㉿ 팀장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7) GGG 대표가 추천을 요청받아 자문위원을 추천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시 GGG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제차 확인한 결과, ㉿㉿㉿ 팀장은 자문위원(LLL, JJJ, KKK) 모두 GGG 대표의 지시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진술하였고, III 실장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

28) ㉿㉿㉿ 팀장은 자문위원 후보 리스트는 2018. 7. 13. 당시 인사담당자인 ㉿㉿㉿을 통해 만들었다고 진술하였고, III 실장은 당시 인사팀장이 만든 자료가 자문위원 선정에 활용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팀장도 본인이 자문위원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였다고 진술

29) 당시 방송비주얼개선 팀원으로 근무하던 PPP은 방송본부 차원에서 요청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송비주얼개선팀에서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방송기획팀 ㉿㉿㉿ 팀장은 방송본부 차원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2) 국문 BI 용역계약 부적정

공영홈쇼핑 GGG 대표는 2018. 7. 5. 홍보팀장인 QQQ(이하 “QQQ 팀장”이라 한다.)에게 그간 BI 개발용역 진행 경과³⁰⁾를 보고 받고 홍보팀에 기존 사용 중인 공영홈쇼핑 채널명(공영쇼핑)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홍보팀은 BI 제작용역 중에 주주사 간 이견으로 개발이 중단되었던 (주)QQQQQQQQQQQQQQQQQQ(이하 “QQQQQQQ”라고 한다)와의 용역을 2018. 7. 16. 재개하였다.³¹⁾

한편, GGG 대표는 2018. 8월 중순경(날짜 모름) QQQ 팀장에게 BI 제작 관련 누군가³²⁾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야기가 잘 돼 RRR체를 활용한 디자인(이하 “RRR체”라고 한다)을 쓰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후 같은 해 8말 경 경영 회의에서 기존 QQQQQQ에서 제작 중인 BI와는 별개로 RRR체를 활용하여 BI를 추가로 제작할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PPPPP팀에서 진행하도록 지시³³⁾하였다.

이후 GGG 대표는 2018. 9월 말경(날짜 모름) 디자인 담당 직원 등³⁴⁾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RRRRRRR 대표로 하여금 RRR체를 토대로 제작한 국문 BI 시안을 발표³⁵⁾하게 하였고, 2018. 10. 4. GGG 대표가 디자인 담당 직원 등³⁶⁾

30) QQQQQQ와 “공영홈쇼핑 채널명 및 BI 개발” 계약 체결(‘15.9.3) → QQQQQQ에서 채널명(온바로 쇼핑) 제시(‘15.11) → 주주사(00, 000000)간 채널명에 대한 이견*으로 용역 잠정 중단(‘16.3. ~ ‘18.7)

* 주주사인 00은 “하나로”를, 000000는 “아임쇼핑”을 채널명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

31) (GGG 대표, QQQQQQ, 2018. 7. 20) BI 변경 추진 방향 협의 → (QQQQQQ, 2018. 7. 24., 30) 홍보팀에 BI 디자인 수정 시안을 2차례 제출 → (GGG 대표, 2018. 8. 8) 브랜드 디자인 네이밍을 확정하고 기본 디자인 결정 → (QQQQQQ, 2018. 8. 10) GGG 대표가 결정한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응용 디자인 개발 착수 → (QQQQQQ, 2018. 9. 13) 명함 및 쇼핑백 등 응용 디자인을 홍보팀에 보고 → (QQQQQQ, 2018. 10. 2) 매뉴얼을 홍보팀에 최종 제출 → (홍보팀, 2018. 10. 11) GGG 대표에게 QQQQQQ에서 개발한 BI 개발 결과물 보고 후 QQQQQQ에 용역이 최종 완료되었다고 통보

32) QQQ 팀장은 GGG 대표가 언급한 “누군가”가 RRR 교수로 추정된다고 진술

33) QQQ 팀장은 GGG 대표가 동 사항을 지시할 당시에는 추가 BI를 제작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

34) PPPPP팀(NNN 팀장), QQQQQ팀(SSS 차장, TTT 과장, UUU 과장) 등

35) RRRRRRR이 국문 BI 시안을 발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RRRRRRR 대표는 2018. 9월 초중순경 VVV 전 의원으로부터 공영홈쇼핑 CI(Corporate Identity) 관련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VVV 의원실에 방문하여 BI 개발방향 협의 미팅*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RRRRRRR 대표는 같은 해 9. 21. RRR 교수로부터 국문 BI 로고 서체 디자인을 전달받고 GGG 대표와 9월 중말경 BI 디자인 제작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말경 공영홈쇼핑 임직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 자리에서 국문 BI 시안을 발표하였다고 진술

* RRRRRRR 대표는 미팅 당시 GGG 대표, VVV 전 의원, XXX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

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국문 BI 개발 마무리 단계인 ㉠㉠㉠㉠㉠과 용역계약이 필요하다고 언급³⁷⁾함에 따라 ㉡㉡㉡㉡팀은 2018. 10. 18. ㉠㉠㉠㉠㉠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31. 용역을 완료하였다.³⁸⁾ 계약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 [표 5] 국문 BI 용역계약 세부 내용 >

계약명	계약 업체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계약방식
네이밍 및 BI 개발 용역	㉢㉢㉢㉢	14,500,000 ³⁹⁾	'18. 7. 16. ~ '18. 10. 11.	수의회약
공영홈쇼핑 BI 개발용역	㉠㉠㉠㉠㉠	19,910,000 ⁴⁰⁾	'18. 10. 18. ~ '18. 10. 31.	수의회약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용역 등을 발주할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계약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동 강령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GGG 대표는 2018. 9월경(날짜 모름) ㉠㉠㉠㉠㉠과 계약을 체결하

36) 디자인 담당자, LLL 자문위원, JJJ 자문위원 등(구체적인 참석자는 모름)

37) 추가 BI를 제작하면서 기존 ㉣㉣㉣㉣가 아닌 ㉠㉠㉠㉠㉠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 팀장은 GGG 대표가 ㉣㉣㉣㉣의 BI 기본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기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

38) 공영홈쇼핑은 ㉠㉠㉠㉠㉠에서 개발한 국문 BI를 2018. 10. 24.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10.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채널명을 신고

39) 공영홈쇼핑은 '15.9 ~ '16.3월 ㉣㉣㉣㉣의 프로젝트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당시 총계약금액 5,800만 원 중 4,350만 원을 기(既)지급하고, 잔금 1,450만 원으로 동 용역비용을 지급

40) 총계약 금액 19,910,000원 중 10,010,000원은 서체 개발 명목으로 RRR 교수에게 지급

지 않은 상태에서 ㉸㉸㉸㉸㉸㉸에 국문 BI를 제작하도록 사실상 요청⁴¹⁾한 후 2018. 9월 말경(날짜 모름) 디자인 담당 직원 등⁴²⁾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 대표로 하여금 공영홈쇼핑 국문 BI 시안을 발표하게 하였고, 같은 해 10. 4. 신규 BI 논의를 위한 회의⁴³⁾를 진행하면서 RRR체를 토대로 국문 BI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내에서 ㉸㉸㉸㉸㉸㉸과 계약이 필요하다고 언급⁴⁴⁾하여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홈쇼핑 대표라는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⁴⁵⁾

또한 NNN 팀장은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일(2018. 10. 18.)을 실제 계약일(2018. 10. 23.)보다 앞선 날짜로 하여 작성⁴⁶⁾하는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이행 기간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1) ㉸㉸㉸㉸㉸㉸ ㉸㉸㉸ 대표는 '18. 9월 초중순경 GGG 대표로부터 국문 BI 제작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실제 작업은 계약 전인 9월 말부터 진행하였다고 진술

42) ㉸㉸㉸㉸팀(NNN 팀장), ㉸㉸㉸㉸㉸팀(SSS 차장, TTT 과장, UUU 과장) 등

43) 회의 장소(대표이사실), 참석자(디자인 담당자, LLL 자문위원, JJJ 자문위원 등)

44) III 실장은 '18. 10. 4 대표이사실에서 신규 CI/BI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가 RRR 서체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위해 2천만 원내에서 ㉸㉸㉸㉸㉸㉸ 계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이를 당시 업무수첩에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III 실장 업무수첩에는 RRR체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위해 2천만 원내에서 ㉸㉸㉸㉸㉸㉸과 계약이 필요하다는 GGG 대표의 당시 코멘트가 적혀있었다. 또한 ㉸㉸㉸ 실장은 '18. 10월 초 III 실장, NNN ㉸㉸㉸㉸팀장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III 실장으로부터) 해당 업무(국문 BI 제작)는 ㉸㉸㉸㉸팀 업무이니 결정된 내용으로 기안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NNN 팀장은 2018. 10월 초 III 실장이 ㉸㉸㉸㉸실 ㉸㉸㉸ 실장에게 ㉸㉸㉸㉸㉸과의 수의계약을 ㉸㉸㉸㉸팀에서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

45) GGG 대표가 RRR체를 활용하여 개발한 기본 디자인(이하 "RRR체 디자인"이라 한다)을 기존 ㉸㉸㉸㉸㉸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 QQQ 팀장이 GGG 대표가 ㉸㉸㉸㉸㉸의 BI 기본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GG 대표도 ㉸㉸㉸㉸㉸의 BI 결과물이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실제로도 GGG 대표가 2018. 7월 말경 홍보팀을 통하여 ㉸㉸㉸㉸㉸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BI 기본 디자인을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던 점, ㉸ 2018. 8월 초경 ㉸㉸㉸㉸㉸의 BI 기본 디자인을 보고받고, 2018. 8월 중순경 RRR 교수와 BI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였던 점(같은 해 9월 중순경 RRR체 기본 디자인 완성), ㉸ RRR체 디자인이 ㉸㉸㉸㉸㉸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되어 ㉸㉸㉸㉸㉸에 동 용역을 재의뢰할 경우 추가 용역에 대한 비용을 협의하여야 하는 등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 ㉸ GGG 대표가 국문 BI를 제작할 당시 ㉸㉸㉸ 본부장을 겸직함에 따라 BI 디자인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GGG 대표가 ㉸㉸㉸㉸㉸의 BI 디자인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 BI를 제작하도록 한 것 자체를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6) 계약날짜를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NNN 팀장은 용역 계약일('18. 10. 23.)과 BI 디자인 이사회 의결일('18. 10. 24.) 등의 날짜 간격이 짧아 향후 문제(짧은 개발 기간 등)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이를 수습하고자 계약일을 '18. 10. 23.에서 '18. 10. 18.로 변경하였다고 진술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⁴⁷⁾

한편, ☆☆☆ 대리⁴⁸⁾는 계약 상대방인 ㉿㉿㉿㉿㉿㉿으로부터 ㉿㉿㉿㉿㉿㉿의 비교견적업체인 (주)㉿㉿㉿㉿의 견적서⁴⁹⁾를 제출받아 ㉿㉿㉿㉿㉿㉿과 2018. 10. 23.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비용의 우위 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자 의견】

가) GGG 대표

GGG 대표는 국문 BI 제작은 당시 장관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고 국문 BI 제작 관련 방침을 전달한 이후 계약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GG 대표가 계약을 체결 전에 ㉿㉿㉿㉿㉿㉿ ㉿㉿㉿㉿ 대표로 하여금 공영홈쇼핑 임직원이 참여한 회의 자리에서 국문 BI 시안을 발표하도록 한 점⁵⁰⁾, 이후 신규 BI 논의를 위한 회의 자리에서 ㉿㉿㉿㉿㉿㉿과 계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⁵¹⁾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GGG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7) NNN 팀장이 2018. 8월 말경 GGG 대표가 추가 BI 제작을 ㉿㉿㉿㉿팀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GG 대표 지시를 한 달가량이 지난 9월 말경이 되어서야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NNN 팀장은 2018. 8월 말경 경영 회의(팀장 이상 참석) 당시에는 과장 직급으로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GGG 대표의 지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NNN은 2018. 9. 1. ㉿㉿㉿㉿팀장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되어 NNN 팀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다만 NNN 팀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사안을 한 달가량이 지난 후에야 인지한 것에 대해 의문이 있어, 당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NNN 팀장에게 2021. 5. 10. 등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NNN 팀장은 2021. 3. 31. 공영홈쇼핑을 퇴사함에 따라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등 답변을 거부하여 위 사유를 확인하지 못함.

48) ☆☆☆ 대리 ㉿㉿㉿㉿팀 재직 기간 : 2018. 09. 01. ~ 2019. 01. 13

49) 견적 금액 : ㉿㉿㉿㉿㉿(19,910,000원), (주)㉿㉿㉿㉿(29,040,000원)

50) NNN 팀장은 2018. 9월 말경(날짜 모름) 대표이사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영홈쇼핑 국문 BI 를 공개하고 ㉿㉿㉿㉿㉿이 국문 BI 시안을 발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 대표도 2018. 9월 말경 공영홈쇼핑 회의실에서 국문 BI 시안을 발표하였다고 진술

51) III 실장은 2018. 10. 4. 대표이사실에서 신규 BI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자리에서 GGG 대표가 RRR체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위해 2천만 원내에서 ㉿㉿㉿㉿㉿㉿과 계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 대표는 2018. 10. 18. 공영홈쇼핑과 국문 BI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

나. 하도급계약 관련

공영홈쇼핑은 브랜드 정체성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9. 1. 7. (주) dddddd(이하 “ddd”라 한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⁵²⁾하였으며, 과업 내용은 아래 [표6] 와 같다.

< [표6] 광고대행사 과업 내용 >

구분	과업 내용
브랜드캠페인 기획	공영쇼핑 브랜드 컨셉 재조정, 가치 제고 방안 검토
중장기 슬로건 개발	방향 1안) 소비자 관점의 슬로건 개발
	방향 2안) 브랜드캠페인 기획 방향에 맞춘 슬로건 개발
크리에이티브 전략	브랜드 캠페인용 크리에이티브 개발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활성화 크리에이티브 개발
캠페인 운용	변경된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전략에 따른 연간 로드맵 설정

자료 : dddd와의 계약서 과업 내용 중 일부 발췌

한편 공영홈쇼핑은 독립캠페인 광고, 캐릭터, 영문 BI를 제작하기로 하고 이를 광고대행사인 dddd에게 하도급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7] 와 같다.

< [표 7] 하도급계약 현황 >

하도급 내용	하도급사	계약금액(원)	용역 수행 기간
독립캠페인 광고 제작	카피라이터 ㉠㉠(광고문안작성)	38,115,000	2019. 1. ~ 2.
	㉡㉡㉡㉡(디자인제작)	9,670,000	
캐릭터 제작	(주)㉢㉢㉢㉢가 용역 수행 도중 포기하여, (주)㉣㉣㉣㉣가 용역을 수행	112,673,000	2019. 1. ~ 12.
영문 BI 제작	㉤㉤㉤㉤㉤	8,050,000	2019. 10 ~ 11.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52) 계약방식 (나라장터 공개입찰), 계약기간 (2019. 1. 7. ~ 2020. 1. 6.), 계약금액 (30억 원)

1) 독립캠페인 광고 제작 하도급계약 부적정

공영홈쇼핑은 2019. 1. 3. 브랜드캠페인 관련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는 광고(이하 “독립캠페인”이라 한다)를 기획한 후 광고대행사인 dddd로 하여금 카피라이터 ㉠㉠(광고문안작성)과 ㉡㉡㉡㉡㉡㉡(광고 디자인 제작)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였고, 같은 해 2월경(날짜 모름) 광고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2019. 3. 15. dddd에 독립캠페인 광고 제작비용 63,360천 원을 지급하였고, dddd는 같은 해 4. 30. ㉡㉡㉡㉡㉡㉡에 38,115천 원을, 같은 해 6. 25. 카피라이터 ㉠㉠에게 9,670천 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 강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GGG 대표는 2019. 1. 3. 브랜드캠페인 관련 광고 회의⁵³⁾ 자리에서 NNN 팀장에게 카피라이터 ㉠㉠과, ㉡㉡㉡㉡㉡㉡에 위 용역을 의뢰하라고 지시⁵⁴⁾하는 등 하급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요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게 하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NNN 팀장은 GGG 대표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 7. 광고대행사인 dddd에 독립캠페인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광고 문안 작성은 ㉠㉠에게,

53) 참석자 : GGG 대표, 자문위원(LLJ, JJJ, KKK), NNN 팀장, FFF 주임 등

54) NNN 팀장은 “2019. 1. 3. 브랜드캠페인 관련 회의 자리에서 GGG 대표가 본인(NNN 팀장)에게 외부전담팀*이라고 표현하며 독립캠페인 광고 문안 작성은 ㉠㉠과, 광고 디자인은 ㉡㉡㉡㉡㉡과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본인(NNN 팀장)은 외부전담팀을 통한 광고 대행 하도급은 공공기관으로서 광고주의 갑질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GGG 대표는 광고 대행에 대한 하도급이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하면서 하도급을 진행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

* 브랜드캠페인 용역을 진행할 카피라이터 ㉠㉠과, ㉡㉡㉡㉡㉡으로 판단

광고 디자인 제작은 ㉸㉸㉸㉸㉸㉸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날 dddd 측에서는 사내에 카피라이터가 있고 독립캠페인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 풀(pool)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독립캠페인을 기획하고 광고 시안을 제작해보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NNN 팀장은 2019. 1. 7. GGG 대표에게 dddd의 입장을 보고하였고 GGG 대표는 같은 날 NNN 팀장에게 dddd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잡을 것을 지시하였다.⁵⁵⁾

이후 GGG 대표는 2019. 1. 15. dddd 대표를 만나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독립캠페인을 그 사람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⁵⁶⁾하는 등 dddd가 2019. 1. 7. NNN 팀장을 통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재차 요구하는 등 광고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대행사가 하도급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였다.

【관계자 의견】

GGG 대표는 독립캠페인 광고 제작과 관련하여 광고대행사인 dddd가 사업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 방향과 다른 시안을 지속 제시함에 따라 광고 일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dddd가 공영홈쇼핑 측에 업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자문위원으로부터 외주업체인 ㉸㉸, ㉸㉸㉸㉸㉸(이하 “외주업체”라고 한다)을 추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다. 한편 dddd 시안과 외주업체 시안을 다수⁵⁷⁾가 평가하여 외주업체 시안을 선정하였다고 하면서 이후 과정

55) NNN 팀장은 dddd 대표에게 연락(날짜 모름)하여 2019. 1. 15.로 면담 일정을 잡았다.

56) dddd 대표는 2019. 1. 15. GGG 대표에게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한 후 dddd ㉸㉸ 이사에게 “공영홈쇼핑의 하도급 요청을 거부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고, ㉸㉸ 이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GGG 대표의 요청을 수락하였다“라고 하면서, GGG 대표의 하도급 요구에 강요성이 있다”라고 진술

57) FFF 주임은 2019. 2. 8. 광고 시안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GGG 대표, ㉸㉸㉸ 본부장, ㉸㉸㉸ 실장, NNN 팀장, FFF 주임, 업체 관계자(ddd, ㉸㉸, ㉸㉸㉸㉸㉸) 등이 있었다고 진술

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GGG 대표가 dddd와의 면담일정을 잡도록 지시(2019. 1. 7.)하고 dddd에 특정업체와 하도급 하도록 요청한 시점(2019. 1. 15.)이 dddd가 광고 시안을 제시한 시점(2019. 1. 22.)보다 앞서고 있는 점, dddd 측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캠페인 광고를 제작해보겠다고 하였고, 공영홈쇼핑의 하도급 요구에 강요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에 따라 dddd가 공영홈쇼핑에 독립캠페인 광고 제작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⁵⁸⁾, 외주업체를 자문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는 하지만 ㉸㉸㉸㉸㉸㉸은 2018년도 국문 BI 제작⁵⁹⁾ 당시 RRR 교수로부터 추천받은 것으로 확인⁶⁰⁾되는 점, 2019. 2. 8. 독립캠페인 관련 광고 시안 발표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었으나 공영홈쇼핑이 dddd에 외주업체와 하도급 하도록 요청한 후 비교평가를 진행 한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dddd와 외주업체 간 비교평가가 이루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최소한의 증빙자료(회의록, 평가표 등)도 없는 점, 더욱이 비교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원사업자인 dddd에 있는 바에 따라 발주사인 공영홈쇼핑이 dddd와 외주업체를 비교평가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점⁶¹⁾ 등을 고려하면 GGG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8) 각주 56 참조

59) 국문 BI 제작용역 기간 : '18. 10. 18. ~ '18. 10. 31.

60) GGG 대표가 ㉸㉸㉸㉸㉸㉸은 국문 BI 제작 당시 RRR 교수로부터 추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문 BI 제작 시점(2018. 10월경)이 독립캠페인 제작 시점(2019. 2월경)보다 앞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독립캠페인 광고 제작 전부터 ㉸㉸㉸㉸㉸㉸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61) 공영홈쇼핑과 dddd 간 종합광고대행 계약서(이하 “광고대행계약서”라고 한다)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대행사(dddd)로 하여금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서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이 대행사(dddd)와 외주업체(㉸㉸, ㉸㉸㉸㉸㉸㉸)를 비교평가하여 결과적으로 외주업체(㉸㉸,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이는 대행사(dddd)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침해하고 대행사(dddd)에게 오로지 책임만을 부담하게 한 행위로서 광고주라는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등하지 아니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캐릭터 제작 하도급계약 부적정

공영홈쇼핑 GGG 대표는 2018. 9. 29.과 같은 해 10. 16. 방송본부회의⁶²⁾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고, 같은 해 12월 초(날짜 모름)부터 P()P()P()P()팀에 캐릭터 제작과 관련하여 “JJJ 자문위원을 믿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같은 해 12. 5. 캐릭터 관련 업무를 P()P()P()P()팀에서 수행하도록 하면서 광고대행사(dddd)를 통해 1억 원⁶³⁾의 캐릭터 비용을 처리하도록 지시⁶⁴⁾⁶⁵⁾하였다.⁶⁶⁾

이후 P()P()P()P()팀은 JJJ 자문위원으로부터 (주)U()U()U()U()를 하도급업체로 추천⁶⁷⁾받아 dddd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ddd는 2019. 2월 (주)U()U()U()U()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같은 해 4월 (주)U()U()U()U()가 용역을 자진 포기⁶⁸⁾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하도급업체를 (주)V()V()V()V()⁶⁹⁾로 변경하여 캐릭터 제작을 완료하였다.

-
- 62) 당시 GGG 대표는 방송본부장을 겸직하였으며, 방송본부회의는 팀장 이상 간부가 참여
- 63) 캐릭터 제작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캐릭터 제작물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특별히 정해진 가격이 없고 업체별 책정 기준이 상이하어 캐릭터 제작비용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사실상 곤란
- 64) 공영홈쇼핑은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2018. 10. 12.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하였으며, 같은 해 12. 5. dddd가 광고대행사로 낙찰됨에 따라 GGG 대표가 P()P()P()P()팀에 캐릭터 제작을 지시하였을 당시에는 광고대행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 65) NNN 팀장은 GGG 대표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캐릭터 비용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P()P()P()P()팀은 2018. 12. 10.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dddd와의 기술 협상을 통해 캐릭터 활용방안을 광고 대행 과업에 포함시켰다고 진술
- 66) 한편, GGG 대표의 지시가 부당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❶ GGG 대표가 JJJ 자문위원을 믿고 진행하라고 언급하였지만 JJJ은 영상(촬영) 분야 자문위원으로 캐릭터 제작과 관련하여 업무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점, ❷ 광고대행사를 통해 캐릭터를 제작하라고 지시하면서 업체를 특정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JJJ 자문위원에 의해 하도급업체 추천이 이루어졌던 점, ❸ GGG 대표 지시 후 광고대행사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활성화 크리에이티브 개발 항목(캐릭터 제작)을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2019. 1. 7.)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GGG 대표의 지시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67) JJJ 자문위원은 (주)U()U()U()U()를 캐릭터 용역업체로 추천하고 P()P()P()P()팀과 (주)U()U()U()U()와의 상견례 자리(2019. 1. 11.)를 주선하는 등 하도급 업체선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 68) 공영홈쇼핑은 캐릭터 제작 과정에서 “공영홈쇼핑의 요구사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주)U()U()U()U() 측에서 자진 용역 포기 의사를 밝혀 계약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면서 “(주)U()U()U()U()의 용역을 (주)V()V()V()V()가 이어받아 완료하였다”라고 하였다.
- 69) JJJ 자문위원은 P()P()P()P()팀과 (주)V()V()V()V()의 상견례 자리(2019. 5. 2.)를 주선하는 등 P()P()P()P()팀에 (주)V()V()V()V()를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였다.

이후 공영홈쇼핑은 dddd에 캐릭터 제작비용 112,673천 원⁷⁰⁾을 지급하였고, dddd는 같은 해 3. 29. (주UUUUU)에 56,100천 원을, (주VVVV)에 총 4차례⁷¹⁾에 걸쳐 51,260천 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NNN 팀장⁷²⁾은 GGG 대표가 2018. 12월초 PPPP팀에 캐릭터 제작과 관련하여 “JJJ 자문위원만 믿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dddd로 하여금 JJJ 자문위원이 추천한 업체인 (주UUUUU)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UUUUU)가 캐릭터 제작용역을 수행하던 중 용역을 자진 포기함에 따라 JJJ 자문위원이 (주UUUUU)를 대체할 업체로 (주VVVV)를 추천하자 NNN 팀장은 dddd에 하도급업체를 (주VVVV)로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광고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대행사가 하도급 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였다.

【관계자 의견】

NNN 팀장은 캐릭터 제작과 관련하여 GGG 대표가 본인에게 “JJJ 자문위원을 믿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JJJ 위원이 추천한 업체를 GGG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GG 대표가 “JJJ 자문위원을 믿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언급하였을 뿐 업체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 NNN 팀장은 동 용역의 책임자 임에도 불구하고

70) 1차('19. 2. 28. 58,850천 원), 2차('19. 7. 31. 13,629천 원), 3차('19. 8. 30. 9,009천 원), 4차('20. 9. 30. 12,705천 원), 5차('20. 1. 3. 18,480천 원)

71) 1차('19. 8. 2. 12,980천 원), 2차('19. 9. 30. 8,580천 원), 3차('19. 10. 31. 12,100천 원), 4차('20. 2. 4. 17,600천 원)

72) NNN 팀장 PPPP팀 재직 기간 : 2018. 9. 1. ~ 2019. 12. 24.

자문위원이 추천⁷³⁾한 업체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광고대행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NNN 팀장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영문 BI 제작 하도급계약 부적정

공영홈쇼핑 NNN 팀장은 2019. 8월 브랜드K⁷⁴⁾ 행사에 사용할 영문 BI가 없어 GGG 대표에게 이를 보고하자 GGG 대표가 NNN 팀장에게 영문 BI를 개발할 것을 지시⁷⁵⁾하였다.

이에 NNN 팀장은 2019. 8월 GGG 대표의 지시사항을 ㉮㉮㉮실장인 ㉮㉮㉮(이하 “㉮㉮㉮ 실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였고, ㉮㉮㉮ 실장이 dddd 관계자를 만나 ㉮㉮㉮㉮㉮㉮과 영문 BI 제작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dddd는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월경(날짜 모름) 영문 BI 제작을 완료시켰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2019. 11. 30. dddd에 영문 BI 제작비용 8,050천 원을 지급하였고, dddd는 다음 해 1. 31. ㉮㉮㉮㉮㉮㉮에 7,700천 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 실장⁷⁶⁾은 NNN 팀장이 2019. 8월 말경 ㉮㉮㉮㉮㉮㉮에 영문

73) JJJ 자문위원의 업체 추천이 부당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JJJ은 영상 분야 자문위원으로 캐릭터 제작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가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JJJ 자문위원이 업체를 추천한 행위 자체를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74) 글로벌 시장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만이 브랜드K가 될 수 있으며, 2020년도 기준 브랜드K 제품은 총 120여 개에 달한다.

75) NNN 팀장은 GGG 대표가 국문 BI를 제작한 ㉮㉮㉮㉮㉮㉮에 영문 BI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GG 대표는 영문 BI를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항은 기억하지만 하도급계약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양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NNN 팀장과 GGG 대표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동 지시 관련 양자 간의 진술만 남아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 등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곤란한 상태이다. 한편, ㉮㉮㉮ 실장은 GGG 대표가 영문 BI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

76) ㉮㉮㉮ 실장 ㉮㉮㉮실 재직 기간 : 2019. 1. 14. ~ 2019.12. 25

BI를 제작하라는 GGG 대표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에 영문 BI 제작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을 보고⁷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대행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경 ㉡㉡㉡㉡팀 NNN 팀장, FFF 주임과 함께 광고대행사인 dddd의 ㉢ ㉢ 이사(㉣)를 만나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영문 BI 제작용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광고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대행사가 하도급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였다.

【관계자 의견】

㉤㉤㉤ 실장은 BI 개발이 광고대행사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광고대행사를 통한 하도급계약으로 진행하였다고 답변하면서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을 지정하여 dddd에 하도급을 하도록 요청한 것은 절차상 결함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I 개발이 dddd와의 광고대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광고대행 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dddd로 하여금 특정업체와 하도급 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에는 동 행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는 ㉤㉤㉤ 실장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7) NNN 팀장은 ㉤㉤㉤ 실장에게 광고대행사 측에 ㉠㉠㉠㉠㉠㉠의 영문 BI 제작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을 2차례에 걸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실장은 NNN 팀장이 위와 같은 우려 사항을 보고하며 dddd에 본인(NNN 팀장)이 직접 말하기 미안하니 저(㉤㉤㉤ 실장)에게 dddd에 말 좀 해달라고 해서 제(㉤㉤㉤ 실장)가 NNN 팀장에게 dddd와 미팅을 잡도록 지시하고 dddd ㉢ ㉢ 이사에게 영문 BI 개발 등의 비용을 광고 대행 비용으로 집행할 것을 부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

4. 징계요구 양정 및 조치할 사항

가. 징계요구 양정

1) GGG 대표

수의계약(자문용역, 국문 BI 용역) 및 하도급계약(독립캠페인 광고 용역) 체결과정에서 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비리의혹 제보문서를 피제보자에게 공유한 GGG 대표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제3항 제4호⁷⁸⁾, 제4조 제1항⁷⁹⁾, 제23조 제2항⁸⁰⁾ 및 제30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임원인사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른 문책(중징계 상당) 사유에 해당한다.⁸¹⁾

2) NNN 팀장

하도급계약(캐릭터 제작용역) 체결과정에서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국문 BI 용역 계약서상의 계약날짜를 실제계약 날짜와 상이하게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한 NNN 팀장에 대하여 징계양정 등을 검토한 결과 경징계에 해당 하나 2021. 3. 31. 위 사람이 퇴직함에 따라 징계요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OOO~~ 실장

하도급계약(영문 BI 용역) 체결과정에서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78)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9)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제23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81) [Ⅲ-④-징계요구양정-가]항과 합 건하여 조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 실장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제2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30조 제8호에 따른 경징계에 해당한다.

나. 조치할 사항

1) 운영지원과장,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수의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비리의혹 제보문서를 피제보자에게 공유한 GGG 대표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제3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3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GGG 대표가 2021. 1. 31. 퇴사함에 따라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⁸²⁾ [통보 (인사자료)]

2)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②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 실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③ 아울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2인 견적서를 부적절하게 수령하여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9조를 위반한 ₩₩₩ 차장, ⅡⅡⅡ 과장, ☆☆☆ 대리에게 주의를, 실무자로 하여금 계약서 인쇄일을 삭제하도록 하고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과 상이하게 작성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과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2조를 위반한 ₩₩₩ 팀장에게는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차장, ⅡⅡⅡ 과장, ☆☆☆ 대리 (주의), ₩₩₩ 팀장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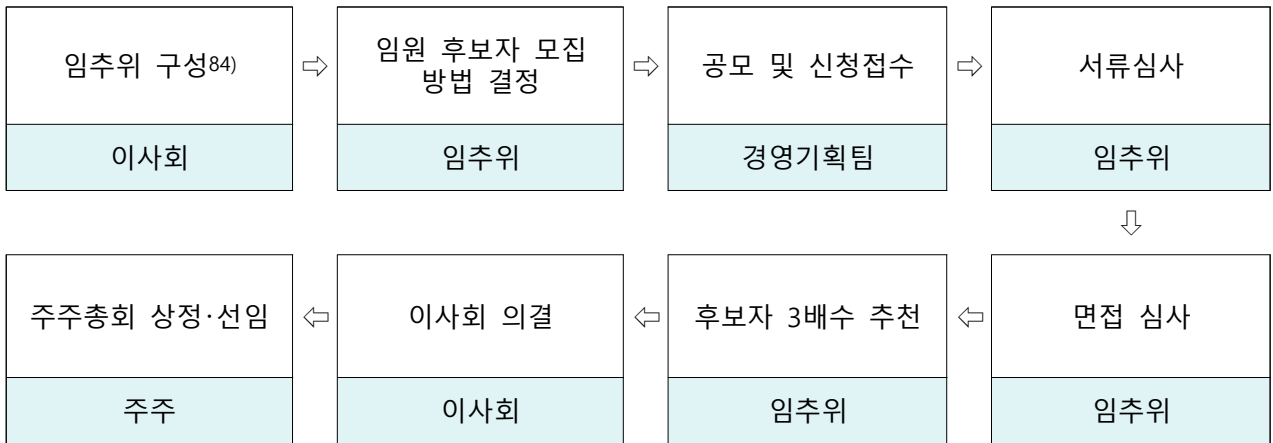
82) [Ⅲ-④-징계요구양정-가]항과 합 건하여 조치

공영홈쇼핑이 ♣♣♣ 이사를 연임시키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연임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1. 업무개요 및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 임원 선임 절차는 아래 [그림1] 와 같이 ①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라고 한다.) 구성⁸³⁾ ② 임원 후보자 모집 방법 결정 및 후보자 공모 ③ 서류·면접 심사 ④ 후보자 추천 ⑤ 이사회 의결 ⑥ 주주총회 상정 및 선임의 절차로 진행되며 임기는 2년이다.

< [그림 1] 선임 절차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공영홈쇼핑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하 “임추위 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83) (주)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3인, 농협경제지주(주)에서 3인을 추천하며, 임추위 위원은 사내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단계까지 모두 관여한다.

84)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6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공영홈쇼핑은 상임이사인 ♣♣♣ ◎◎◎◎본부장⁸⁵⁾(이하 “♣♣♣ 이사”라고 한다.)을 연임시키면서 임추위 추천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2020. 8. 28. ‘2020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체 이사 7명 중 5명⁸⁶⁾⁸⁷⁾이 참석한 가운데 ♣♣♣ 이사의 연임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9. 11. ‘2020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의결하였다.⁸⁸⁾

따라서 ♣♣♣ 이사가 임추위를 거치지 않고 연임되었지만 「임추위 규정」에서 임추위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연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⁸⁹⁾

85) ♣♣♣ 본부장 사내이사 임기 : 2018. 10. 1. ~ 2020. 9. 30.

86) 대표이사 GGG, 사내이사 ♣♣♣, 사내이사 JJJ, 사외이사 LLL, 사외이사 KKK

87) ♣♣♣ 이사가 본인의 연임 안건이 포함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근거로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법률자문(법무법인 0000, '20.11.19) 의견 : 「공영홈쇼핑 이사회 규정」 제5조 제2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법 제368조 제3항(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례 및 학설에 의한 확립된 법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규정 제5조 제2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법 제391조 제3항, 제268조의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개인법설이 통설이며, 판례도 개인법설을 따르고 있어 이사의 회사기회이용, 자기거래승인과 같이 이사가 순수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의 경우 해당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결의와 같이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20.12.4)도 유사한 의견 제시)
- ②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한 유사 판례(청주지법 2010카합124) :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한 “임원의 선임과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 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호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기업법개설(출판사 : 박영사, 저자 : 최기원) p174 : 이사의 선임 및 해임결의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의 기본적 권리인 회사지배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특별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④ 상법강의(출판사 : 이지문화, 저자 : 법학박사 김학묵) p478 : 주주가 이사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결의시에는 해당 주주도 참가한다.(단체법원리가 지배하는 것은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88) 당시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공영홈쇼핑 대표와 주주 3인*이 모두 참석하여 ♣♣♣ 본부장을 사내이사로 1년 연임하는 것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확인

* (주)중소기업유통센터(대리인 MMM), 농협경제지주(주)(대리인 NNN),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대리인 OOO)

다만, 공영홈쇼핑이 이사 등 임원의 연임을 추진할 때는 연임 근거 등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의 경우 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⁹⁰⁾과는 달리 「정관」에 연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임추위 규정」 제15조 제5항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 이사 연임과 관련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비 등 논란이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공영홈쇼핑은 “임원에 대한 연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임원 연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89) [주요] [주요]실장은 「정관」상 ‘선임’이 기존 사례를 볼 때 신규 선임과 연임 2가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내이사의 연임이 부결되면 임추위 절차를 거쳐서 사내이사를 선임할 예정이었고 기존 사내이사의 연임이 결정되면 별도 임추위 구성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

- [주요] [주요]실장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공영홈쇼핑이 「정관」에 연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원을 연임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공영홈쇼핑 「정관」에는 임원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아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법무법인 0000('20.11.19.), 0000공단('20.12.4.)]
- 한편, 법제처 09-0397(2010.1.2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외의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 또는 재위촉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위원의 연임 또는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해석

90) 타 기관 사례 : 연임에 관한 상세 규정이 있는 기관(00000000, 00000000, 000000000 3개 기관), 연임에 관한 상세 규정이 없는 기관(000000 1개 기관) 한편, 준정부·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감사실이 일상감사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과도한 감사를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인사권을 침해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절차 등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 감사실(이하 “감사실”이라 한다.)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2018. 1. 1. 「일상감사 시행요령」을 제정하는 한편 2019. 12. 31. 일상감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적극적 일상감사’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⁹¹⁾하여 회사의 주요 이슈 사항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⁹²⁾ 일상감사 실적은 아래 [표8] 와 같다.

< [표 8] 일상감사 실적 >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⁹³⁾
일상감사 실적(건)	128	48	108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91) ‘적극적 일상감사’ 제도 운용 추진방안 중 일부 발췌

- ① 기존 일상감사 대상 범위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전 예방 감사를 시행
 - 상임감사 요구 건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일상감사 대상 발굴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실질적 사전 감사 기능 강화
 - * 절차 : 일상감사 요청(감사실)→현업부서 자료제출 및 보고(집행부서)→점검 및 의견(시행 또는 보류 등) 통보(감사실)→결재 후 시행(집행부서)
- ② 해당 운영 방침을 전사 공지하여 현업부서별 추진업무의 현안·비용 등의 자발적 관리강화 및 준수 유도

92) 문서번호 : ♠♠실 19-386 (2019. 12. 31.), 뽕뽕뽕 ♠♠실장과 BBB ♠♠팀장은 적극적 일상감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현업부서가 요청하기 어렵거나 담당자가 일상감사를 요청하기 힘든 경우에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일상감사 제도하에서 현업의 직무적 책임을 한걸 자유롭게 하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진술

93) 2020. 1. ~ 9. 실적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 「일상감사 시행요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범위에
에는 인사, 경영기획 등[별첨 1 참조]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조항 제2호에 따
르면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같은 요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동 요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
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
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는 그 기관의 전자 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
산 또는 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기록물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일상감사의 경영권·인사권 침해 여부

공영홈쇼핑 GGG 대표는 감사실이 일상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
영권⁹⁴과 인사권⁹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성수 임시콜센터 고정(정식) 운
영 건’과 ‘이동형 스튜디오 운영 건’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사
업추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영권을, ‘보직 인사발령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늦게 통보하여 인사발령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인사권을 침해한 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상감사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경영권 침해 관련 ‘성수 임시콜센터 고정(정식) 운영 건(소요 예산 약
4.5억 원)’과 ‘이동형 스튜디오 운영 건(소요 예산 약 7~10억 원)’은 총금액 2억

94)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례 : 성수 임시콜센터 고정(정식) 운영방안 보고 건(㉠㉠㉠㉠팀), 이동형 스
튜디오 운영계획서 보고 건(㉡㉡㉡팀)

95) 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례 : 보직인사 발령 건(==팀)

원⁹⁶⁾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고,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점⁹⁷⁾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가 부당하거나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⁹⁸⁾

또한 인사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2020. 6. 15. 인사팀이 제출한 일상감사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⁹⁹⁾가 있어, 감사실이 같은 날인 6. 15.과 다음 날인 6. 16. 두 차례에 걸쳐 인사팀에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인사팀은 같은 해 6. 24. 보완서류¹⁰⁰⁾를 제출하였고, 감사실은 다음 날인 6. 25.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감사실이 인사팀으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다음날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한 점¹⁰¹⁾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사안에 대한 일상감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거나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⁰²⁾

96) 「일상감사 시행요령」 별표 제1호에서는 전사 공통으로 총금액 2억 원 이상의 구매 또는 용역계약 체결 건에 대해 일상감사 해당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다.

97) 「일상감사 시행요령」 제9조에 따르면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나, 동 건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98) &&& &&& 센터장은 ‘성수 임시콜센터 고정(정식) 운영방안 보고 건’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 경영진에서 제3콜센터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한 사항으로 일상감사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팀 ①① ① 과장은 ‘이동형 스튜디오 운영계획 보고 건’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

99) &&&& ♠♠실장은 보직 인사발령 건에 대한 일상감사는 인사팀 &&&& 대리(이하 “&&&& 대리”라고 한다.)가 2020. 6. 15. 감사실에 신청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보직 인사발령안(案)이 직제규정 시행요령 내용과 상이*하고, 서명이 일부 누락 되어있어 같은 날인 6. 15. &&&& 대리에게 일상감사를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 대리는 다음날 인 6. 16. 동 건 관련 일상감사를 재신청하여 직제 개정 사항과 인사발령안(案)이 상이하었던 부분은 수정되었으나, &&&& ℃℃본부장의 서명이 누락되어 &&&& ℃℃본부장 서명과 함께 인사발령안(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

* 기(既) 직제규정 시행요령 일상감사(2020. 6. 11.) 시 중기·식품상품실 각 2팀 체제였으나, 인사발령안(案)은 각 3팀 체제로 변경되어 있었음

100) &&&& ℃℃본부장이 서명한 인사발령안(案) 및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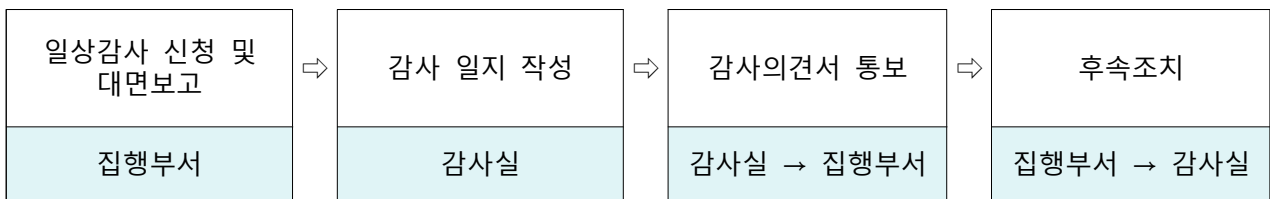
101) 「일상감사 시행요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동 요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요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 회신기간을 규정하지 않음

102) 한편, 인사팀은 일상감사 의견회신 기간인 7일을 초과하여 감사실에 보완서류를 제출함

나. 일상감사 운용 절차 부적정

공영홈쇼핑의 일상감사 절차는 아래 [그림 2] 와 같이 ① 일상감사 신청 및 대면보고¹⁰³⁾ ② 감사 일지 작성 ③ 감사의견서 통보¹⁰⁴⁾ ④ 후속조치¹⁰⁵⁾의 절차로 진행된다.

< [그림 2] 일상감사 절차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일상감사 결과는 집행부서가 사업을 수행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감사실은 2018년부터 2020. 9월까지 실시한 총 284건의 일상감사 중 131건은 감사일지 중 핵심인 감사의견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고, 91건은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으며¹⁰⁶⁾, 2020년 1월부터 9월¹⁰⁷⁾까지 실시한 총 108건의 일상감사 중 34건은 감사의견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실은 일상감사 일지 등 기록물을 전자 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감사업무 처리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감사 처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등 일상감사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103) 「일상감사 시행요령」 제5조에 따르면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요청 시 집행부서의 팀장 또는 기안자가 상임감사에게 대면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4) 통상 감사의견 통보는 일지로 갈음하지만, 집행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7일 이내 회신한다.

105) 집행부서는 감사실의 감사의견을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14일 이내에 감사실로 통보한다.

106) 감사실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는 조치한 내용을 감사실에 통보하지 않았고, 감사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107) 2018년과 2019년은 「일상감사 시행요령」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따라 일상감사 처리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파악 곤란

【관련자 의견】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앞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이행 확인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며, 감사의견서 송부 및 기록물 관리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앞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감사의견서 송부 및 기록물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별첨 1]

< 일상감사 해당 업무 범위 >

구 분	세 부 내 용
전사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금액 2억 이상의 구매 또는 용역계약 체결 * 단, 시스템개발/변경 등 IT관련 구매 또는 용역계약은 1억 이상 ○ 규정, 요령, 지침, 기준 등 사규 제·개정 ○ 1천만 원 이상 비용 집행되는 해외공무여행
영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브랜드별/협력사별/거래형태별(직거래/벤더) 매출실적 분석 ○ 월간 신규 협력업체 입점경로 ○ 월간 긴급선정 사유 ○ 월간 편성 현황 (첫걸음기업, 창의혁신제품, 주주사편성비 등) ○ 월간 편성 변경 현황 ○ 월간 직매입 현황 (기존/신규 상품별 재고, PGM달성율/매출 등)
방송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호스트 신규 및 재계약 관련 보고
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승진 ○ 직원 근무평정 결과 ○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 파트장 이상의 보직자 임명 또는 해임 ○ 승진, 연봉조정, 평가조정, 징계 등 인사위원회 결과 ○ 해외연수 시행 및 결과 보고
경영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및 운영 ○ 조직 개편 및 정원계획의 수립 ○ 분기별 예산대비 실적 집행을
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말 결산보고서 (회계규정에 따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상임감사 요구 건

자료 : 공영홈쇼핑 「일상감사 시행요령」 중 발췌

Ⅲ-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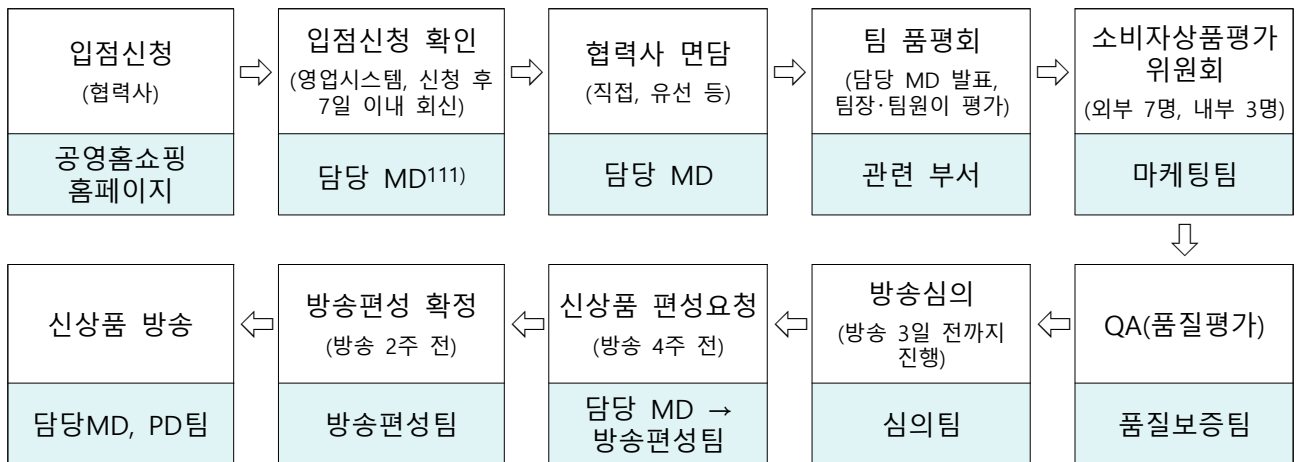
비리의혹 당사자인 상임감사의 감사 관여 등 부적정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본인이 연루된 제보사항(방송편성 특혜 등)을 감사 지휘하고 종결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1. 업무개요

공영홈쇼핑의 신상품¹⁰⁸⁾ 입점 절차는 아래 [그림 3] 와 같이 ① 입점 신청 ② 협력사 면담 ③ 팀 품평회¹⁰⁹⁾ 및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¹¹⁰⁾ 개최 ④ 품질평가 및 방송심의 ⑤ 방송편성 ⑥ 방송 송출의 절차로 진행된다.

< [그림 3] 신상품 입점 절차 >



자료 : 공영홈쇼핑 제출자료 재구성

2. 관련 법령 등 판단기준

공영홈쇼핑 「감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

108) 공영홈쇼핑 입점 대상품 :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등

109) 각 팀 단위로 품평회를 진행하며 담당 MD가 상품을 발표하고 팀장 및 팀원들이 평가(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 미달일 경우 탈락)

110)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구성(14명) : 위원장 1명(실장급 부서장), 외부 10명(공고 선정, 소비자·시민 단체 등 외부전문가), 내부 3명(비영업 유관부서 담당자)

111) 상품기획전문가(Merchandiser) : 상품기획·발굴·개발 등 업무를 담당

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그 밖에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가. 상임감사 및 감사실장의 방송청탁 의혹 관련

공영홈쇼핑 협력사인 ㉠㉠㉠㉠㉠ ㉡㉡㉡ 대표이사(이하 “제보자”라고 한다.)는 GGG 대표에게 “공영홈쇼핑 비리 의혹 및 방송 문제점 시정 요청의 건”(이하 “공영홈쇼핑 비리의혹”이라고 한다)을 2020. 2. 11. 신고¹¹²⁾하였다.

위 신고 중 공영홈쇼핑 ㉢㉢㉢ 상임감사(이하 “㉢㉢㉢ 감사”라고 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강기능식품인 보간해소(이하 “보간해소”라고 한다.)를 상품 기획하여 2019. 2. 24. 공영홈쇼핑에 방송하였으나 추가 방송편성이 되지 않자 제보자는 공영홈쇼핑을 잘 안다는 ㉣㉣㉣에게 방송을 부탁하였고, ㉣㉣㉣는 공영홈쇼핑 ㉢㉢㉢ 감사를 잘 알고 있는 ㉤㉤㉤를 통해 ㉢㉢㉢ 감사, ㉦㉦㉦ 감사실장(당시 ××××실장, 이하 “㉦㉦㉦ 실장”이라 한다.)을 만나 보간해소를 방송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9. 5. 11. 07:20분에 방송하였으며, 이후 2019. 5월경(날짜 모름) 청탁의 대가로 ㉣㉣㉣가 ㉤㉤㉤와 ㉢㉢㉢ 감사에게 사례하겠다는

112) 2020. 2. 10. ㉠㉠㉠㉠㉠의 제보내용 요약

- | |
|---|
| <p>① 제보자가 지인을 통해 공영홈쇼핑 관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방송편성을 부탁하여 2019. 05. 11. 07:20 건강기능식품이 방송되었으며, 제보자로부터 부탁받은 지인이 공영홈쇼핑 관계자(㉢㉢㉢ 감사 등)에게 사례하겠다는 제보자에게 사례금을 요구하여 현금 200만 원을 제공</p> <p>② ‘00전기레인지’ 제품이 공영홈쇼핑 상품선정위원회에 통과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방송 지연</p> <p>③ 비리의혹에 ♠♠실 직원(㉢㉢㉢ 감사와 ㉦㉦㉦ 실장)이 관련되어 있으니 다른 부서에서 조사할 것을 요청</p> |
|---|

며 제보자에게 사례금을 요구하여 현금 2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는 보간해소 등 방송편성이 잘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¹¹³⁾에게 연락하였고, ㉠㉠㉠는 지인인 ㉡㉡㉡¹¹⁴⁾를 통해 공영홈쇼핑 관계자인 ㉢㉢㉢ 감사¹¹⁵⁾, ㉣㉣㉣ 실장¹¹⁶⁾과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제보자는 2019. 5. 10. ㉠㉠㉠, ㉡㉡㉡와 함께 ㉢㉢㉢ 감사, ㉣㉣㉣ 실장과의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¹¹⁷⁾하는 차 안에서 ㉠㉠㉠에게 보간해소 등 방송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는 ㉢㉢㉢ 감사, ㉣㉣㉣ 실장과의 저녁식사¹¹⁸⁾ 자리에서 보간해소 방송에 대해 언급¹¹⁹⁾하였으며, 다음 날인 5. 11. 07:20분에 보간해소가 방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9. 5. 11. 보간해소가 방송된 경위를 보면, ㉤㉤㉤㉤㉤이 2019. 3월 초경 2019. 5. 11.과 같은 해 5. 20.에 보간해소 방송을 계획한 후 2019. 3월에 서 4월경(날짜 모름) 공영홈쇼핑 ㉦㉦㉦ 주임(MD)에게 ㉤㉤㉤㉤㉤이 계획한 날짜로 하여 방송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공영홈쇼핑은 같은 해 4. 19. 방송편성회의를 거쳐 같은 해 4. 26. 방송편성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보간해소 방송편성이 확정된 시점이 제보자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9. 5. 10. 공영홈쇼핑 관계자와의 저녁식사 자리보다 앞서고 있고, 동 건 관련 사실관계를

113) 제보자는 3~4년 전에 투자처를 찾던 중 ㉠㉠㉠를 만났다고 진술

114) ㉠㉠㉠와 ㉢㉢㉢ 감사는 2019. 5. 10. 처음 만났다고 진술

115) ㉢㉢㉢ 감사는 ㉡㉡㉡가 상품입점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여 약속을 잡았다고 진술

116) ㉣㉣㉣ 실장(당시 ××××실장)은 ㉢㉢㉢ 감사가 지인이 상품입점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상품입점절차를 모르니 같이 동석해 달라고 하여 같이 만났다고 진술

117) 제보자는 2019. 5. 10 본인(제보자)이 직접 회사 차로 ㉠㉠㉠와 ㉡㉡㉡를 약속 장소까지 태워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

118) ㉠㉠㉠, ㉡㉡㉡, 공영홈쇼핑 관계자(㉢㉢㉢ 감사, ㉣㉣㉣ 실장) 총 4명이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저녁 식사 비용은 ㉢㉢㉢ 감사가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

119) ㉣㉣㉣ 실장은 2019. 5. 10.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 물걸레청소기(오토싱 제품)에 대한 입점절차를 문의하면서 보간해소 제품이 공영홈쇼핑 방송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고 하는 등 보간해소 방송에 대해 언급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공영홈쇼핑 홈페이지에 '보간해소'를 검색하여(방송편성 확정된 상품은 검색 가능) 2019. 5. 11. 방송편성이 되어있음을 확인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¹²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간 해소 방송편성과 관련하여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¹²¹⁾

또한 ㉸㉸㉸ 감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2019. 5. 14. ㉸㉸㉸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넸고¹²²⁾, ㉸㉸㉸가 2019. 5월에서 6월경(날짜 모름) ㉸㉸㉸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이에 ㉸㉸㉸ 등 관련자를 조사하였으나 ㉸㉸㉸는 ㉸㉸㉸로부터 받은 현금 200만 원을 ㉸㉸㉸ 감사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 감사는 방송청탁을 하지 않았는데 금품을 수수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 감사가 ㉸㉸㉸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동 건 관련 방송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 감사가 현금 등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¹²³⁾

나. 비리의혹 제보자 보호 부실

제보자는 2020. 2. 11. 공영홈쇼핑 비리의혹을 제보하였고, 같은 날 GGG 대표는 공영홈쇼핑 비리의혹 제보문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GGG 대표는 ㉸㉸㉸㉸㉸ 관계자(㉸㉸㉸ 이사)와 통화하여 제보내용에 연루된 ㉸㉸㉸ 감사를 만날 것을 권유하면서, 동 제보 건을 공영홈쇼핑 감사실에 맡기겠다고 한 후 2020. 2월경(날짜

120) 제보자는 1차(2020. 10. 14.) 면담에서 동 청탁으로 2019. 5. 11. 생방송이 송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2020. 12. 9.) 면담에서는 감사자가 제보자에게 2019. 5. 11. 생방송 편성 관련 조사 경위 등 사실관계를 언급하자 제보자는 동 청탁은 2019. 5. 11. 방송에 대한 청탁이 아니라 2019. 5. 20. 재방송에 대해 청탁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함.

121) 보간해소 담당 MD(Merchandiser)인 ㉸㉸㉸ 주임은 ㉸㉸㉸ 감사 및 ㉸㉸㉸ 실장 등과 보간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122) ㉸㉸㉸는 현금 200만 원은 제보자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었고, 일부 채무가 있어서 정산 차원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제보자는 ㉸㉸㉸에게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금과 연 2% 이율로 모두 정산 완료한 상태였으며, ㉸㉸㉸에게 준 200만 원은 채무와 별개라고 주장

123) ㉸㉸㉸는 ㉸㉸㉸에게 준 현금 200만 원은 ㉸㉸㉸가 오래된 지인이고 재정상 어려움에 있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는 ㉸㉸㉸와 유통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법인카드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현금 200만 원을 준 것으로 ㉸㉸㉸에게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현금 200만 원의 출처가 제보자라는 것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 또한 ㉸㉸㉸ 감사는 방송 청탁이 없었는데 금품을 수수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금품수수는 절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였으며, 제보자도 현금 200만 원이 ㉸㉸㉸ 감사에게 전달됐다고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

모름) ㉹㉹㉹ 감사에게 제보문서를 건네주었다.¹²⁴⁾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임직원에 대한 규정 위반행위 등을 신고받았을 때는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GGG 대표는 제보자가 비리의혹을 제보하면서 ♠♠실 직원(㉹㉹㉹ 상임감사, ㉹㉹㉹ ♠♠실장)이 제보내용에 연루되어 있으니 감사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관계자(㉹㉹㉹ 이 사)에게 피제보자를 만날 볼 것을 권유하면서, 제보문서에 대한 조사를 공영홈쇼핑 감사실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후 동 제보문서를 ㉹㉹㉹ 감사에게 전달하였다.

그 결과 제보자의 회사 정보가 공영홈쇼핑 직원 등 외부에 노출되어 공영홈쇼핑과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다. 비리의혹 당사자인 상임감사의 감사 관여

GGG 대표로부터 제보내용을 전달받은 ㉹㉹㉹ 감사는 2020. 2. 25. ㉹㉹㉹㉹ ㉹㉹㉹㉹ 관계자(㉹㉹㉹ 이사)와 통화하여 면담 약속을 잡고 2020. 2. 27.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실에서 BBB ♠♠팀장, 제보자 등 총 5명¹²⁵⁾이 면담하였다.

㉹㉹㉹ 감사는 2020. 2. 27. 면담 시 제보자에게 본인의 비리의혹에 대해 해명¹²⁶⁾하고 제보 관련 조사는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보자로부터 동의받은 것으로 판단¹²⁷⁾하여, 같은 날 면담에 배석한 BBB 팀장에게 본

124) ㉹㉹㉹ 감사는 GGG 대표가 ㉹㉹㉹ 이사에게 상임감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만나보시죠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 이사도 GGG 대표가 ㉹㉹㉹ 감사를 만나 볼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

125) 공영홈쇼핑물(㉹㉹㉹ 감사, BBB ♠♠팀장), ㉹㉹㉹㉹㉹(㉹㉹㉹ 대표, ㉹㉹㉹ 이사, ㉹㉹㉹ 전무)

126) ㉹㉹㉹ 감사는 당시 ㉹㉹㉹ 등을 만난 것은 방송 관련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방송 일정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돈도 받지 않았다고 제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보자는 ㉹㉹㉹ 감사가 제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전기레인지 방송 지연 등 억울한 일에 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을 뿐 ㉹㉹㉹ 감사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술

127) ㉹㉹㉹ 감사는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할지 감사실에서 조사할지 물어보자 제보자가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보자는 조사 관련하여 ㉹㉹㉹ 감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조사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2가지 선택지뿐이라 판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 조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

인 관련 의혹은 제외하고¹²⁸⁾ 감사실에서 조사하도록 한 후 감사계획¹²⁹⁾ 및 결과보고서¹³⁰⁾를 결재하였다.¹³¹⁾

공영홈쇼핑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를 할 때는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감사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을 감사에서 배제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㉔㉔㉔ 감사는 상임감사라는 사실상의 우월적인 지위¹³²⁾를 이용하여 비리의혹을 신고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 본인의 비리의혹을 해명하고 제보자가 수긍하였다고 스스로 판단¹³³⁾하여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제외하고 감사실에서 조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㉔㉔㉔ 감사와 ㉕㉕㉕ 실장은 본인이 연루된 공영홈쇼핑 비리의혹 제보 건에 대한 감사계획과 결과보고서에 결재하는 등 동 제보에 대한 감사에 관여하였다.

그 결과 ㉔㉔㉔ 감사와 ㉕㉕㉕ 실장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 128) ㉔㉔㉔ 감사는 제보자가 제보내용의 조사를 감사실에서 하는 것에 동의한 것 자체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본인의 비리의혹이 해소되어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BB ㉖㉖ 팀장도 ㉔㉔㉔ 감사 관련 비리의혹은 해명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비리의혹은 조사 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보자는 ㉔㉔㉔ 감사가 본인의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
- 129) 비전자문서 : ㉖㉖실20-258호('20.06.09.), 결재 : ㉖㉖ 팀장 BBB, ㉖㉖ 실장 ㉕㉕㉕, 상임감사 ㉔㉔㉔ 서명
 감사사항 : ① 전기레인지 상품 방송지연 관련, ② 보간해소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협력사와 MD와 유착 관계 의혹 관련, ③ 일부 협력사의 독과점 폐해 의혹 관련, ④ 방송 런칭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 등
- 130) 비전자문서 : ㉖㉖실20-342호('20.07.17.), 결재 : ㉖㉖ 팀장 BBB, ㉖㉖ 실장 ㉕㉕㉕, 상임감사 ㉔㉔㉔ 서명
- 131) ㉔㉔㉔ 감사와 ㉕㉕㉕ 실장은 습관적·관성적으로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BB 팀장은 결재권자가 제척대상일 때 전결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재권자로 되어있는 ㉔㉔㉔ 감사와 ㉕㉕㉕ 실장에게 통상의 절차를 밟았다고 진술
- 132) ㉗㉗㉗㉗ 측에서는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만나자고 했을 때 협력사로써 안 만날 수가 없었다고 진술
- 133) ㉕㉕㉕ 실장은 ㉔㉔㉔ 감사가 2020.2.27. 제보자와 면담을 마친 후 감사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과 ㉕㉕㉕은 해당 제보건 감사 시 제척대상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감사실 직원들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㉔㉔㉔ 감사는 ㉖㉖ 팀장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진술

【관련자 의견】

가. GGG 대표

GGG 대표는 제보내용 확인을 위해 ㉸㉸㉸ 감사와 상담하였고 ㉸㉸㉸ 감사에게 제보문서 사본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제보문서 사본을 ㉸㉸㉸ 감사가 무단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GGG 대표가 ㉸㉸㉸㉸㉸ 관계자(㉸㉸㉸ 이사)와 통화하면서 제보문서를 감사실에 맡기겠다고 언급하였고, ㉸㉸㉸ 감사도 GGG 대표로부터 제보문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GG 대표가 ㉸㉸㉸ 감사에게 제보문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보문서를 피제보자인 ㉸㉸㉸ 감사에게 공유한 사실 만으로도 제보자 신분이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보문서를 ㉸㉸㉸ 감사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GGG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 감사

㉸㉸㉸ 감사는 제보문서 내용 중 본인에 대한 방송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감사로 진행했다고 하면서, 이후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보고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감사가 본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을 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감사를 진행하게 한 점, 이후 동 제보 비리 의혹에 연루된 ㉸㉸㉸ 감사가 감사보고서 등에 결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 감사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가. GGG 대표

공영홈쇼핑 비리의혹 제보자가 감사실 직원이 제보내용에 연루되어 있으니 감사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 관계자 (㉡㉡㉡ 이사)에게 피제보자를 만날 것을 권유하면서 제보문서에 대한 조사를 감사실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후 동 제보문서를 ㉢㉢㉢ 감사에게 건네준 GGG 대표의 행위는 공영홈쇼핑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이는 [Ⅲ-①-4-나-①]항과 합 건하여 징계양정 한다.

나. ㉢㉢㉢ 감사

본인이 연루된 비리의혹을 제외하고 감사하도록 하고 이후 감사계획과 결과보고서에 결재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 감사에 대하여 징계양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책(경징계 상당¹³⁴)사유에 해당 하나 2021. 3. 11. 위 사람이 퇴직함에 따라 징계요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① [Ⅲ-①-4-나-①]항과 합 건하여 인사자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인이 연루된 비리의혹 제보 건에 대한 감사계획과 결과보고서에 결재하는 등 감사에 관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 실장에게는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134) 동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 감사 결과 ㉢㉢㉢ 감사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 방송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영홈쇼핑이 특정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위 의혹에 연루된 직원의 의원면직을 허가한 것과 관련하여 절차가 적정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 업무 개요

공영홈쇼핑의 의원면직 절차는 퇴직 예정자가 퇴직원¹³⁵⁾을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인사부서는 의원면직 사항을 대표에게 승인받고 허가¹³⁶⁾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영홈쇼핑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검찰·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자체 또는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고 한다)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받던 $\in \in \in$ 팀 NNN 팀장¹³⁷⁾은 2021. 3. 29. 퇴직원을 인사부서에 제출하였고, 퇴직원을 접수한 인사부서는 같은 해 3. 31. NNN 팀장의 의원면직을 허가하였다.

공영홈쇼핑은 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때는 감사기관 등에서 해당 직원이 조사대상자인지 등을 확인 후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일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Sigma\Sigma\Sigma$ 대리¹³⁸⁾는 위 「취업규칙」의 의원면직 규정과 중기부 특정감

135) 보안서약서, 업무인수인계서, 퇴직자 면담 조서 등 포함

136) 인사부서의 담당자, 팀장, 실장, 본부장, 대표이사 서명받은 후 비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

137) 의원면직 퇴직일 : 2021. 3. 31.

사(이하 “특정감사”라고 한다)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NNN 팀장이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비위 조사대상자인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 퇴직원에 2021. 3. 30. 서명하였다.¹³⁹⁾

그리고 [OOO] 실장¹⁴⁰⁾은 위 「취업규칙」의 의원면직 규정과 특정감사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였고, 또한 2021. 1월 비위 의혹 조사대상자(GGG 대표)가 특정감사 도중 사임하여 논란¹⁴¹⁾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NNN 팀장이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비위 조사대상자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같은 해 3. 30. 서명하였다.

또한, [OOO] 본부장¹⁴²⁾은 위 「취업규칙」의 의원면직 규정과 특정감사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였고, 또한 2021. 1월 비위 의혹 조사대상자(GGG 대표)가 특정감사 도중 사임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인지¹⁴³⁾하였음에도 NNN 팀장이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비위 조사대상자인지 등에 대해 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같은 해 3. 30. 퇴직원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의원면직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취업규칙」의 의원면직 관련 규정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비위로 조사 중인 직원을 퇴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⁴⁴⁾

138) [OOO] 대리 인사부서 최근 재직 기간 : 2018. 4. 19. ~ 2021. 5. 9

139) [OOO] 대리는 2020. 3. 30. 출근(2020.3.29. 재택근무)하여 부서 직원으로부터 NNN 팀장 퇴직원을 전달받아 [OOO] 실장과 [OOO] 본부장에게 서명받고 다음 날인 3. 31. 퇴직원을 비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GGG 대표 사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140) [OOO] [OOO] 실장대행(인사팀장 겸직) 보직 기간 : 2020. 6. 29. ~ 감사일 현재(2021. 7. 8.)([OOO] 팀장(직무대행 포함) 보직 기간 : [2019.4.10. ~ 감사일 현재(2021. 7. 8.)]

141) GGG 대표 사임(2020. 1. 25.)과 관련하여 국회와 언론이 비위 의혹으로 감사 중인 GGG 대표의 사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중기부에 문의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중기부가 동 사안을 공영홈쇼핑에 문의하여 공영홈쇼핑이 동 사안을 법률자문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영홈쇼핑에서도 동 사안이 논란되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142) [OOO] 본부장(대표이사 권한대행) 보직 기간 : 2019. 7. 22. ~ 감사일 현재(2021. 7. 8.)(대표이사 권한대행 : 2021.2.1. ~ 감사일 현재(2021. 7. 8.)]

143) [OOO] 팀장 [OOO] 팀장은 GGG 대표 사임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OOO] 본부장에게 구두보고 한 것으로 기억하며, 통상 법률자문 결과는 본부장에게 보고한다고 진술

【관계자 의견】

가. ∑∑∑ 대리

중기부가 특정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로서 NNN 팀장이 조사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업무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하였다.

나. ㉠㉠㉠ 실장

㉠㉠㉠ 실장은 퇴직 신청자가 비위 관련 조사대상자인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어 동 사항을 확인할 생각을 못 하였다고 하면서 중기부가 특정감사 중이고 NNN 팀장이 조사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취업규칙」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NNN 팀장을 의원면직 허가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였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다. ♣♣♣ 본부장

♣♣♣ 본부장은 NNN 팀장이 특정감사에서 조상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이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의원면직을 허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의원면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감사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NNN 팀장이 특정감사 조사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의원면직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

144) 한편, GGG 대표가 중기부 특정감사 종료 전 의원면직(2021. 1. 31.)한 것과 관련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3에 따르면 임용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 대상자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영홈쇼핑은 임추위 추천과 주주총회 의결로 대표를 선임하고 있어 장관이 임용·제청권자가 아니고, 더욱이 GGG 대표 의원면직 당시에는 징계 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GGG 대표의 의원면직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다. 더욱이 「취업규칙」의 의원면직 규정과 2021. 1월 비위 의혹 조사대상자 (GGG 대표)가 특정감사 도중 사임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NNN 팀장이 중기부 특정감사 조사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규칙」의 의원면직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NNN 팀장의 의원면직을 허가하였다는 ♣♣♣ 본부장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직원을 의원면직하면서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비위 조사대상자인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을 허가한 업무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¹⁴⁵⁾ ΣΣΣ 대리, ☐☐☐ 실장, ♣♣♣ 본부장 (경고)

145) 공영홈쇼핑은 동 사안 관련 의원면직이 접수되면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 등에서 조사받고 있는지 등을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동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NNN 팀장의 의원면직을 고의로 허가하였다고 불만한 근거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공영홈쇼핑 차원에서도 징계받은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삭감, 성과급 미지급 등 별도의 불이익 조치도 불가능하여 공영홈쇼핑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 등이 없는 점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제1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등 유사입법례에서는 의원면직을 허가해서는 안되는 대상을 의원면직 신청자가 중징계(동 사안 관련자인 NNN 팀장의 경우 경징계에 해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조치함.

공영홈쇼핑이 ●●●●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채용후보자가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공영홈쇼핑은 ●●●●본부장을 채용하기 위해 2018. 8. 24.부터 같은 해 9. 7. 까지 채용공고¹⁴⁶⁾하여 서류심사¹⁴⁷⁾¹⁴⁸⁾와 면접심사¹⁴⁹⁾를 거쳐 같은 해 9. 21. ≡ ≡ ≡를 채용후보자로 선정¹⁵⁰⁾ 하였다.

이후 공영홈쇼핑이 ≡ ≡ ≡의 근무경력을 확인¹⁵¹⁾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경력이 정규직 경력으로, ± ± ± ± ± 경력이 μ μ μ μ μ 경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응시원서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¹⁵²⁾하였으나, 동 사항이 채용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¹⁵³⁾하여 2018. 11. 20. GGG 대

146) 공고문 게시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취업포탈사이트), 응시 자격 (채용 분야 관련 경력 20년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근무 기간 (고용계약일로부터 2년, 평가 후 1년 단위로 연장)

147) 심사위원 : (내부) III 실장, ㄷㄷㄷ 실장 (외부) ㄷㄷㄷ 변호사, . . . 변호사, √√√ 노무사

148) ==팀 ΣΣΣ 대리는 서류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응시 자격(채용 분야 관련 경력 20년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을 안내하고, ≡ ≡ ≡의 총근무경력이 20년 미만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로 서류심사를 하였다고 진술

149) 심사위원 : (내부) ㄱ ㄱ ㄱ 사외이사, ㄱ ㄱ ㄱ 본부장 (외부) ㄹ ㄹ ㄹ 노무사, ㅊ ㅊ ㅊ 변호사

150) 모집규모 (1명), 응시인원 (4명), 서류합격자 (3명, 발표 : 18. 9. 11), 면접합격자 (1명, 발표 : 18. 9. 21)

151) ≡ ≡ ≡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

152)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과 실제 경력이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 ≡ ≡는 ± ± ± ± ±는 μ μ μ μ μ 자회사인데, μ μ μ μ μ 근무 중 전출되어 ± ± ± ± ± 경력을 μ μ μ μ μ 경력에 포함하였다고 답변, 이에 ^ ^ ^ 인사팀장이 μ μ μ μ μ 연결재무제표 등을 통해 ± ± ± ± ±가 μ μ μ μ μ 자회사임을 확인하고 ± ± ± ± ± 경력을 인정하였다.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경력증명원 등으로 확인된 실제 경력		
'17.01월 ~ '18.09월	00 0000	정규	'17.01월 ~ '18.09월	00 0000	정규
'11.06월 ~ '17.01월	00 0쇼핑	정규	'11.06월 ~ '17.01월	00 0쇼핑	정규
'09.07월 ~ '11.06월	00 주식회사	정규	'09.07월 ~ '11.06월	00 주식회사	정규
'01.04월 ~ '09.06월	00 홈쇼핑	정규	'01.04월 ~ '09.06월	00 홈쇼핑	정규
'98.11월 ~ '01.02월	μ μ μ μ μ	정규	'00.12월 ~ '01.03월	(주)± ± ± ± ±	계약
			'98.11월 ~ '00.11월	μ μ μ μ μ	계약

153) III ㄱ ㄱ ㄱ 실장은 당사의 경력 인정 기준이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 ± ± ± ± 근무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 ^ ^ 인사팀장은 ≡ ≡ ≡ 근무경력이 20년 미만(19년 9개월)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참고하여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

표에게 보고 후 다음 해 2. 1. 근로계약을 체결¹⁵⁴⁾하였다.¹⁵⁵⁾

이와 관련 위 채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이 당시 채용공고에 “경력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통해 응시원서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고지함에 따라 ㉟㉟㉟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였고, 2018. 10월초 ㉟㉟㉟가 경력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0. 8.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경력증명원의 내용이 다를 것을 인지하고 같은 날 동 사실을 공영홈쇼핑 ^^^ 인사팀장에게 메일로 알린 점¹⁵⁶⁾ 등을 고려할 때 ㉟㉟㉟가 기망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응시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영홈쇼핑이 법률자문 등 내부 검토과정 등을 거쳐 ㉟㉟㉟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채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¹⁵⁷⁾

- ① 법률자문(00노무법인, '18.10.15.) 의견 : 20년의 경력을 '상당인 자'로 규정하는 것은 20년일 때에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의 경력에 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
- ② 법률자문(범무법인 0000, '18.10.15.) 의견 : 19년 5개월은 아직 20년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상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분야 경력의 20년 상당인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고 있음이 기록 등을 통하여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 154) 근로계약기간 (2019. 2. 1.~ 2021. 1. 31.) / * 공영홈쇼핑은 ㉟㉟㉟ 본부장의 근로계약을 1년(2021. 2. 1.~ 2022. 1. 31.) 연장시켰으나, ㉟㉟㉟ 본부장은 2021. 5. 31.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사함.
- 155) 중기부는 동 채용과 관련하여 2020. 3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진수조사에서 공영홈쇼핑이 ●●●본부장을 채용하면서 채용후보자인 ㉟㉟㉟ 경력이 20년 미만(19년 9개월)인 것과 관련하여 채용공고의 응시기준을 '관련 분야 경력의 20년 상당인 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재량적으로 해석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엄격히 해야 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는 사유로 공영홈쇼핑에 '기관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 156) ㉟㉟㉟는 2018. 10월초 ^^^ 인사팀장이 경력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면서 본인(㉟㉟㉟ 본부장)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다를 것을 인지하고 2018. 10. 8. ^^^ 인사팀장에게 사실 확인 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진술
- 157) 한편 중기부도 동 사안이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㉟㉟㉟가 기망의 고의로 응시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영홈쇼핑이 경력 불일치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불일치 사항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㉟㉟㉟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래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동 사안이 채용취소 사유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① 0000공단('20.11.20.)은 ㉟㉟㉟가 착오로 +++++ 경력의 μμμμ 경력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인사팀이 불일치 사실을 발견하고 ㉟㉟㉟의 해명 등 확인 절차와 감사실 내부검토 거쳐 μμμμ과 +++++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㉟㉟㉟를 합격자로 선정한 점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채용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② 범무법인 0000('20.11.17.)는 공영홈쇼핑이 ㉟㉟㉟의 실제경력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실제 경력을 재차 확인 후 채용을 결정하였고, 경력 기술서에 최근 이력부터 작성하여 최초경력인 μμμμ 근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μμμμ 이후의 근무사항만으로 충분히 ㉟㉟㉟를 채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계약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III-⑦

징계처분 직원의 보직발령 의혹 관련

감사팀장(BBB 팀장)이 ♣♣♣♣팀 재직 당시 2박 3일간(휴일 포함)의 제주도 출장 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팀장으로 발령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158)

♣♣♣♣팀은 2016. 8월 “정책지원 신상품 현장 위생점검 목적”으로 제주도로 출장을 갔으며, 당시 BBB 대리159)와 ZZZ 과장은 2016. 8. 8.(월) ~ 8. 10.(수) 3일간, 나머지 3명은160) 같은 해 8. 9.(화) ~ 8. 10.(수) 2일간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으나, 동 출장에는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161), BBB 대리가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어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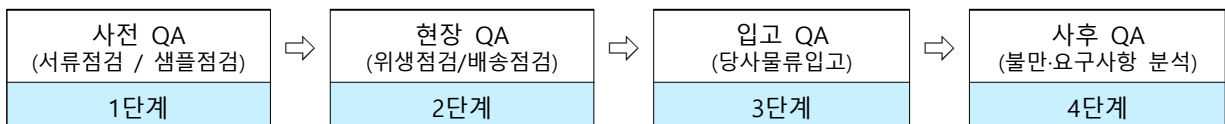
158) 제주 출장 관련 청원(19.3.28) 내용 : 인사팀장이 B+B+B+B+팀 재직 당시 남직원 5명이 제주도 출장 업무를 핑계로 주말을 포함한 2박 3일간 제주도를 여행하고 경비를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임. 한편, 동 청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출장은 2016. 8월 제주도 출장으로 확인됨.

159) ♠♠실 감사팀장 발령 (2019. 1. 14.)

160) ♣♣♣♣팀 비비비 부장, 표표표 과장, 자자자 사원 등 3명

161) 법인카드는 항공권 구입, 렌터카 이용, 연료충진, 숙박 등으로 사용

162) 한편, 위 출장은 품질보증 업무에 따른 2단계 QA(품질보증) 현장 위생점검으로 품질관리팀 5명은 8개 업체에 대해 서류·작업장·작업자·제품·설비 관리 및 회수관리 등 총 38개 항목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고 현장 위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



III-⑧

사측의 노동조합 압력 의혹 관련

공영홈쇼핑이 GGG 대표 비리의혹을 제기한 !!!!!, \$\$\$\$에게 과거 2년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 등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그간 지급한 2.7억여 원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공영홈쇼핑 인사팀(이하 “사측”이라고 한다)은 법률자문 결과¹⁶³⁾를 근거로 노조 측에 근로시간면제자¹⁶⁴⁾인 !!!!!과 \$\$\$\$ (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한다.)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과 향후 사용계획서 제출을 3차례¹⁶⁵⁾ 걸쳐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지급된 임금 276,691,130원¹⁶⁶⁾에 대한 반환을 2차례¹⁶⁷⁾ 걸쳐 요구하였다.¹⁶⁸⁾

이에 노조는 사측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서 요구와 2.7억여 원의 임금 반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2020. 1월경 노조가 @@@본부장 채용 특혜 의혹을 중기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¹⁶⁹⁾한 것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 2020. 6. 17. 국

- 163) 자문 결과(2020. 2. 24.) :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가 법에 정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간 한도 초과 시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 업무 및 사용시간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의견 (OO법률사무소)
- 164)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유급 처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영홈쇼핑은 !!!!!과 \$\$\$\$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있음.
- 165) 1차 ('20.6.2), 2차 ('20.6.16), 3차 ('20.6.26), 요구방식 (공문)
- 166) 공영홈쇼핑에서 산출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일수와 반환청구 대상 금액

구분	해당기간	대상 근무일수(A)	실제 근무일수(B)	근무비율 (B/A)	급여(원)		
					지급(D)	인정(E)	반환(D-E)
!!!	'18.7.11~'20.6.30(721일)	486일	87일	17.9%	309,342,050원	32,650,920원	276,691,130원
\$\$\$\$	'18.8.1~'20.6.30(700일)	471일	9일	1.9%			

- 167) 1차 ('20.7.23), 2차 ('20.8.19), 요구방식 (공문)
- 168) 노조는 2020. 8. 20. !!!!!과 \$\$\$\$에 대한 2020. 8월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면제 활동 계획서를 사측에 제출하였으나 2020. 8월 이전의 면제 시간 사용실적은 제출하지 않았다.

구분	2020년 8월 근로시간면제 활동 계획서 내용
!!! (시간)	단체교섭(157), 고충처리(10), 노동조합 회의(15), 노동조합 활동(5) 등 187시간
\$\$\$\$ (시간)	단체교섭(143), 고충처리(15), 노동조합 회의(12), 노동조합 활동(20) 등 190시간

- 169) 중기부 감사 결과('20. 3. 20.) : ●●●본부장 채용 관련 기관경고 처분

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같은 해 7. 27.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으며, 같은 해 9. 3.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¹⁷⁰⁾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측에 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 소명 및 급여 반환을 중단하되, 향후 사측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는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¹⁷¹⁾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¹⁷²⁾은 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 제출 요구¹⁷³⁾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¹⁷⁴⁾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 업무 및 임금 지급 근거 등의 규정을 신설하라는 조정안¹⁷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동 사안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사측과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 사항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지 않는다.

-
- 170) 신청 내용 : 노조는 2020. 1월 중기부 감사관에게 “○○○ 본부장 특혜 채용 의혹”을 신고하여 공영홈쇼핑은 기관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근로시간면제자 사용실적 및 사용계획서 제출, 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영홈쇼핑의 행위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는 주장
- 171) 처리 결과(2020. 10. 14.) : 신청인(노조)에 대한 2018. 7.부터 2020. 6.까지 근로 면제 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 및 급여 반환 요구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사측)에게 면제 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 및 급여 반환 요구를 중단하기로 하되, 향후 근로 면제 시간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는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 172) 처리경로 : 신고자(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소) →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사실조사 후 검찰에 송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불기소 결정 후 신고자에게 통보 조치)
- 173) 행정해석(노사법제과-1822, '12. 6. 14.)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부여된 면제 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로 노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174) 처리 결과(2020. 4. 2.) : 사측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실적 제출 요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면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175) 처리 결과(2020. 9. 3.) 공영홈쇼핑 「단체협약」 제16조의 1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시간면제자 업무 및 임금 지급 근거 명시, 연간 사용계획서 및 매월 활동 내역 작성 등 근로시간면제자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음.

공영홈쇼핑 GGG 대표가 제2콜센터 사무집기류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구매 계약하도록 부당 지시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공영홈쇼핑은 본사(상암동)에 운영 중인 콜센터와는 별도로 제2콜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였으며 구매를 담당했던 경영관리팀 WWW 팀장과 XXX 사원은 구매 과정에서 GGG 대표가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¹⁷⁶⁾

이에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WWW 팀장과 XXX 사원은 GGG 대표에게 기존 콜센터에서 사용하던 사무집기 등을 재활용하고 일부만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¹⁷⁷⁾하였으나 GGG 대표가 신규 구매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WWW 팀장과 XXX 사원은 기존 거래업체¹⁷⁸⁾의 자문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구 디자인 등 컨셉을 작성하여 2020. 4. 10. GGG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GGG 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컨셉과 맞지 않는다면 □□¹⁷⁹⁾에 컨설팅을 받아보고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¹⁸⁰⁾함에 따라 WWW 팀장과 XXX 사원은 □□에 컨설팅을 받아 ♣♣♣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 본부장은 이를

176) 2020. 5. 6. 공영홈쇼핑 ♠♠실에 제보

177) ♣♣♣ ◎◎◎◎본부장을 통해 GGG 대표이사에게 보고

178) ÆÆÆÆÆÆ, A+A+A+A+A+ 등 2개 업체

179) GGG 대표는 “□□”은 2018년도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에 특화된 중소기업제품(리빙, 잡화 등)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후 “상품개발팀”이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발굴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YYY xxxxx팀장은 홈쇼핑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YYY 팀장은 전 직장인 +++++ 등에 있었을 때부터 ‘□□’은 가구디자인 업체로서 잘 알려져 있었다고 진술)을 발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 10. 30. YYY 팀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디자인 전문 가구업체인 ‘□□’의 상품과 스타트업기업·청년사업가·발명특허품 등 1인 미디어 상품을 중장기 마케팅 전략상품으로 개발하여 방송 기획하는 것과, 단기 매출 확대 아이템으로 조명, 욕실인테리어 등 리빙상품 8개 업체를 발굴하여 방송기획을 계획하였 던 것으로 확인된다.

180) XXX 사원은 당시 GGG 대표는 □□이 전문가이니 □□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WWW 팀장은 □□이라는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보아고 지시한 것은 기억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2020. 4. 20. GGG 대표에게 보고하였으며 GGG 대표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WWW 팀장은 사무집기 등의 구매계획이 변경(재활용→신규)됨에 따라 2020. 5. 8. 일상감사를 신청하였으나 ♠♠실 CCC 과장은 구매계획을 변경하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WWW 팀장과 XXX 사원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근거 등을 검토하던 중 2020. 3월 정부가 발표한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가이드라인¹⁸¹⁾을 확인¹⁸²⁾하였고, 이를 따를 경우 신규 구매가 불가피¹⁸³⁾함에 따라 (주)****과 수의계약¹⁸⁴⁾하여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였다.

위 구매 과정을 볼 때 GGG 대표가 ■■이라는 특정업체에 컨설팅받아 볼 것을 지시하였으나 구매계약 지시는 하지 않았고¹⁸⁵⁾, ■■은 공영홈쇼핑 상품개발팀에서 중장기로 전략상품 등을 구매하고자 발굴한 가구전문업체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GGG 대표가 특정 업체와 구매 계약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¹⁸⁶⁾

181) 공영홈쇼핑은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주요 지침(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라 상담사 좌석 간격 1.5m 이상(금융위), 칸막이 높이는 책상위 90cm 이상(고용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및 결제

182) XXX 사원은 당초 동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제2콜센터 구축은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

183) XXX 사원은 콜센터 정부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상담사 간 좌석 간격이 늘어남(1.2→1.5m, +0.3m)에 따라 기존 제1콜센터도 추가 칸막이(141개)가 필요하여 당초 제2콜센터에 재활용하려고 한 칸막이[제1콜센터의 칸막이와 같은 규격(약 150개), 책상은 칸막이에 상판을 올리는 구조] 등을 제1콜센터에 활용하고 새롭게 구축될 제2콜센터는 신규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상담사 업무 편의를 위해 의자 교체, 개별옷장도 추가 구매하였다고 진술

184) 1억 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장애인 관련 기업 5개 업체에게 건적의뢰하였으나 2개 업체만 건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주)****을 선정('20.6.8.)하고 2020. 6. 10. 일상감사 적정 의견을 받았다.

185) WWW 팀장과 XXX 사원은 GGG 대표가 구매나 수의계약 지시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GGG 대표는 평소 경영관리팀의 구매계획을 검토해보면 인테리어 컨셉에 대한 기획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건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컨셉이 없어 '■■'이라는 가구전문회사에 재능기부형태의 무료컨설팅을 부탁해보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

186) 한편, GGG 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사무집기 등을 신규 구매하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성이 없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구매가 불가피한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에 따라 동 지시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

공영홈쇼핑 감사실이 GGG 대표 비리의혹 등을 감사하면서 직원들에게 강요로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공영홈쇼핑 감사실로부터 확인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직원은 ☆☆☆¹⁸⁷⁾ 팀 FFF 주임과 ==팀 ∑∑∑ 대리이며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FFF 주임은 GGG 대표의 하도급 지시와 관련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작성을 거부¹⁸⁸⁾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¹⁸⁹⁾ ∑∑∑ 대리는 2018년 당시 ○○○본부장 채용 특혜 의혹 관련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확인서 작성 시 강요는 없었다고 답변한 점¹⁹⁰⁾ 등을 볼 때 강요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87) 00000 0000 0000000000

188) FFF 주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감사 중이고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중복으로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확인서 작성을 정중히 거부하였다고 진술

189) FFF 주임은 감사실에서 사전안내 없이 호출하고 확인서 작성 요청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확인서 작성 요청 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

190) ∑∑∑ 대리는 사전안내 없이 감사실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담감이 있었으며 확인서 작성과정 중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 작성 시 협박은 없었으나, 사전안내 없이 감사실에 호출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당시에는 강요로 생각하였다고 진술

공영홈쇼핑 감사실(이하 “감사실”이라 한다.)이 제척 대상인 AAA 과장을 특정감사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④④④④팀 EEE 팀장이 방송미술세트 업체인 (주)kk¹⁹¹⁾가 물품 금액을 과청구하였다는 의혹¹⁹²⁾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실은 2020. 6. 11.부터 같은 해 6. 1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¹⁹³⁾하고 같은 해 6. 24. 관련자를 징계¹⁹⁴⁾요구하였다. 이에 인사팀은 징계처리를 위해 같은 해 7.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제척사유¹⁹⁵⁾가 있는 AAA 과장이 동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감사실로 하여금 재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감사실¹⁹⁶⁾은 인사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AAA 과장을 배제한 후 2020. 7. 2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재감사하여 같은 해 7. 30. 감사 결과를 인사팀 등에 통보하였으나, 이를 보고받은 GGG 대표는 감사보고서가 당초 감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고 관련자 확인서도 날짜와 조사자만 다를 뿐 내용이 동일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91) 계약기간 (18. 7. 1.~ 20. 6. 30.), 계약내용 (스튜디오 세트 디자인, 특수효과에 대한 운영·관리 등)

192) EEE 팀장은 방송미술세트 업체인 (주)kk와의 계약갱신일(20. 7. 1.)이 다가오자 계약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2019. 5월 (주)kk와 계약방식을 변경*한 이후부터 별도 협의 없이 물품비용 외 이윤, 배송비, 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함.

* 공영홈쇼핑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 업체가 물품을 구매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193) 감사반(5명) : ㉠㉠㉠ ㊦㊦실장, BBB ㊦㊦팀장, AAA 과장, CCC 과장, DDD 대리

194) ㉠㉠㉠ ㉠㉠㉠팀장(당시 ㉠㉠㉠팀장)은 소속 직원 및 업무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로 “견책” 처분, 관련 담당자인 HHH 사원(당시 외부 파견직원 신분)은 계약 내용 미숙지 등으로 “구두주의” 처분

195) ㉠㉠㉠팀 근무경력 이 있는 AAA 과장이 동 감사에 참여했다는 내용

196) AAA 과장은 본인이 감사 대상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실장은 당초 감사 시 AAA 과장이 ㉠㉠㉠팀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인지 이후 AAA 과장은 감사 대상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제척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진술 또한 BBB 감사팀장은 AAA 과장은 과거(2018년)부터 감사실에 같이 근무하던 중 ㉠㉠㉠팀에서 근무(약 2.5개월)후 다시 감사실에 발령됨에 따라 ㉠㉠㉠팀 근무이력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척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

이와 관련 동 감사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AAA 과장은 2019. 5. 24.부터 같은 해 8. 5.까지 피감부서(☉☉☉☉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동 감사와는 무관한 업무¹⁹⁷⁾를 담당하여 감사¹⁹⁸⁾ 참여가 부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¹⁹⁹⁾, 또한 감사실이 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AAA 과장을 배제하고 재감사하여 감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²⁰⁰⁾

197) 쇼호스트 충원 업무 등 담당

198) 감사 기간 : 2020. 6. 11. ~ 2020. 6. 19.

199) ☐☐☐ ♠♠실장은 '방송 관련 비용청구'에 대한 특정감사는 AAA 과장 단독으로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사반은 ♠♠실장 및 ♠♠팀장 등 5명이 참여하였으며 질문서 내용도 감사반이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상임감사에게 보고 후 최종 결정되었다고 진술

200) 한편, ♠♠실에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와 재감사 결과보고서가 동일한 것 등과 관련하여 ☐☐☐ ♠♠실장은 해당 감사는 단독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서 내용 등은 감사반이 논의하여 상임감사에게 보고 후 작성된 것으로 CCC 과장도 같은 질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감자들도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가 당초 조사 때와 다르지 않고 추가적인 의견도 없어 당초 조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고 진술

IV. 처분 요약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경징계 1건, 주의·경고 9건(개인 8, 기관1), 인사자료통보 1건, 통보 1건

공영홈쇼핑

구분	건명	관계부서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수의계약 및 하도급계약 업무 부당 처리	☒☒☒☒실	인사자료 통보	경징계 주의·경고(4)	'21.8.9월	
2	사내이사(☉☉☉☉본부장) 연임의 적정성	☒☒☒☒실	통보	-	'21.9월	
3	일상감사 운영 부적정	♠♠실	기관주의	-	'21.9월	
4	비위의혹 당사자인 상임감사의 감사참여 등 부적정	♠♠실	-	경고	'21.9월	
5	비위의혹 관련 피조사자에 대한 의원면직 허가 부적정	☒☒☒☒실	-	경고(3)	'21.9월	

2. 개인 처분 명세 : 경징계 1건, 경고 5건, 주의 3건

공영홈쇼핑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000000	☒☒	☒☒☒	-	-	○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특정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
2	HHHHHHHH	₩₩	₩₩₩	-	○	-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과 상이하게 작성 등
3	❖❖❖❖❖❖❖ (@@@)	¥ ¥	¥ ¥ ¥	○	-	-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2인 견적서를 부적절하게 수령
4	&&&	ΠΠ	ΠΠΠ	○	-	-	
5	^^^ ^^	☆☆	☆☆☆	○	-	-	
6	#####	♣♣♣	♣♣♣	-	○	-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비위 조사 대상자인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 허가
7	☒☒☒☒☒	??	???	-	○	-	
8	♠♠♠	ΣΣ	ΣΣΣ	-	○	-	
9	%%%%%%%%%	☐☐	☐☐☐	-	○	-	본인이 연루된 비리의혹 제보 건에 대한 감사계획과 결과보고서에 결재